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 免稅範圍
設定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우리나라에 附加價値稅制度가 도입된 지 어언 20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동안 많은 抵抗과 施行錯誤를 거치면서 고치고 다듬어 온 附加價値稅制度는 아직도 實質課稅의 원칙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또 이로 인한 稅負擔의 不公平, 去來秩序의 混亂 등 여러 가지 問題點들을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課稅特例制度和 免稅制度이다. 本報告書는 그 중 하나인 附加價値稅 免稅制度和 관련하여 免稅惠澤의 範圍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附加價値稅의 免稅適用은 附加價値稅의 基礎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稅務行政上的 問題點과 經濟活動의 歪曲을 줄이는 데 필요한 最小限度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政策的 必要나 技術的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附加價値稅 免稅 및 零稅率 適用을 허용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免稅範圍는 그 適用基準에 부합되지 않는 분야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도입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진 現時點에 와서는 現行 附加價値稅制度上的 免稅範圍를 經濟循環過程에서의 中立性을 유지하면서 社會的 共感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再調整할 필요가 있다.

本報告書는 本院의 金裕燦 博士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원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서울시立大學校의 崔明根 教授, 本院의 成明宰 博士, 財政經濟院 稅制室 消費稅課의 金樂會 事務官에게 깊이 感謝드리고 있으며 자료 및 원고정리에 힘써준 金勇周 主任研究員과 趙明熙, 張貞順 研究助員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本報告書는 著者의 個人的인 見解를 반영한 것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와는 무관함을 밝혀 둔다.

1995年 6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淇

目 次

I. 序 論	9
II. 現行 附加價值稅法上的 免稅制度和 附加價值稅 稅收規模 ...	11
1. 附加價值稅法上的 附加價值稅 免稅 및 零稅率 適用 範圍	11
2. 附加價值稅의 稅收規模	21
III. 附加價值稅 免稅制度의 問題點과 全般的인 調整方案	26
1. 附加價值稅 免稅制度 自體의 問題點	26
2. 附加價值稅 免稅範圍의 全般的인 調整方案	30
IV. 人的用役に 대한 課稅方案	38
1. 人的用役 附加價值稅 免稅制度의 問題點	38
2. 外國의 制度	42
3. 人的用役 免稅制度의 改編方案	44
4. 人的用役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45
V. 教育用役に 대한 課稅方案	47
1. 教育用役に 대한 附加價值稅 免稅制度의 問題點	47
2. 外國의 制度	50
3. 教育用役 免稅制度의 改編方案	51
4. 教育用役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51
VI. 金融 및 保險서비스에 대한 課稅方案	54
1. 金融 및 保險서비스에 대한 免稅制度의 問題點	54
2. 外國의 金融 및 保險서비스에 대한 課稅制度	60

3. 改編方案	62
4.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62
Ⅶ. 不動產賃貸用役に 대한 課稅方案	64
1. 現行 附加價值稅法上 不動產賃貸用役に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	64
2. 外國의 課稅制度	68
3. 改編方案	70
4. 不動產賃貸用役 免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71
Ⅷ.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課稅方案	72
1. 附加價值稅法上 免稅對象 農·林·畜·水産物	72
2. 農·林·畜·水産物 附加價值稅 免稅의 問題點	73
3.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差等課稅의 UR協定 違背 與否	75
4. 外國의 制度	77
5. 農·林·畜·水産物 免稅制度의 改編方案	80
6. 農·林·畜·水産物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80
Ⅸ. 要約 및 結論	83
〈附錄 I〉 未加工 食料品の 分類	87
〈參考文獻〉	93

表 目 次

〈表 1〉 主要國 및 EU Directive上的 附加價值稅 免稅 및 零稅率 適用 範圍	18
〈表 2〉 附加價值稅의 稅收規模와 比重	22
〈表 3〉 附加價值稅의 國內分과 輸入分 比重 推移	23
〈表 4〉 附加價值稅 稅收比重의 國際比較	24
〈表 5〉 零稅率과 稅額計算	27
〈表 6〉 免稅와 稅額計算	28
〈表 7〉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과 關聯한 附加價值稅 免稅의 根據 ...	32
〈表 8〉 財貨의 輸入과 關聯한 附加價值稅 免稅의 根據	34
〈表 9〉 全家口의 消費支出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雜費 支出比重 推移	40
〈表 10〉 家口當 月平均 手數料 支出 推移	41
〈表 11〉 主要國의 人的用役에 對한 課稅概要	43
〈表 12〉 人的用役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45
〈表 13〉 全家口의 消費支出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教育費 支出比重 推移	48
〈表 14〉 家口當 月平均 補充教育費 支出 推移	49
〈表 15〉 主要國의 教育用役에 對한 課稅概要	50
〈表 16〉 私設學院의 主要 教育用役에 對한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52
〈表 17〉 金融用役에 對한 課稅 結果	55
〈表 18〉 金融用役에 對한 非課稅 結果	56
〈表 19〉 全家口의 消費支出 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利子 支出比重 推移	58
〈表 20〉 主要國의 金融 및 保險서비스에 對한 課稅概要	61
〈表 21〉 銀行部門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63

〈表 22〉	保險部門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1992)	63
〈表 23〉	全家口의 消費支出 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月實 支出比重 推移	65
〈表 24〉	不動產賃貸事業者 現況(1993)	66
〈表 25〉	主要國의 不動產賃貸서비스에 대한 課稅概要	69
〈表 26〉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現行 附加價値稅 課稅體系	72
〈表 27〉	全家口의 消費支出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食料品費 支出比重 推移	74
〈表 28〉	主要國의 未加工 食料品에 대한 課稅現況	78
〈表 29〉	各國의 擬制買入稅額控除率 比較	79
〈表 30〉	農·林·畜·水産物 附加價値 生産 現況	81

附 表 目 次

〈附表 1〉	未加工 食料品 分類表	87
--------	-------------	----

圖 目 次

〔圖 1〕	地代·賃金·利子 等の 免稅 根據에 대한 例	67
〔圖 2〕	擬制買入稅額控除 메커니즘	79

I. 序 論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혹은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免稅 및 零稅率 適用을 허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왜곡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기초식품, 의약품 분야, 교육이나 서적류, 레저산업, 금융서비스, 주택임대업 등과 변호사·세무사 등의 人的用役 분야 등에 대해 免稅率이 적용되고 수출산업과 농민의 비료·농약 등에 대해서는 零稅率이 적용된다.

특정 분야의 면세 혹은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었던 社會·經濟 政策的 目標은 시간과 더불어 바뀌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나 한 번 설정된 면세 혹은 영세율 분야를 課稅化하는 데에는 利害集團의 강한 抵抗에 직면하게 되므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제도상 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 부문들이 앞으로도 계속 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남는 것이 社會·經濟的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들 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 분야 중 특히 몇 가지 분야의 영세율 및 면세율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시된다. 우선 人的用役에 대한 免稅率 適用은 人的用役을 다른 재화와 구별하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데도 이를 非課稅함으로써 稅制의 公平性和 普遍性을 해치고 있다. 또 영리목적의 사설교육용역도 人的用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國內生産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免稅와 輸入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課稅는 衡平性 문제를 야기시키며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代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밖에 금융·보험용역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조합 등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과세도 그 근거가 점차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분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상 면

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 社會·經濟 政策目標에 비추어 그 適合性을 판단해 보고 또 外國(특히 EU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어서 위의 분야에 대하여는 그 분야별 특성에 비추어 어떤 技術的인 問題點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후 綜合的으로 政策代案을 제시해 보도록 할 것이다.

II. 現行 附加價值稅法上的 免稅制度和 附加價值稅 稅收規模

1. 附加價值稅法上的 附加價值稅 免稅 및 零稅率 適用 範圍

가. 附加價值稅法上的 附加價值稅 免稅範圍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制度에 따르면, 附加價值稅法에 규정된 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이 附加價值稅 免除對象이 되며¹⁾, 租稅減免 規制法에 규정된 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도 附加價值稅 免除對象이 된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

附加價值稅法上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財貨나 用役의 供給에 대해 附加價值稅를 免除하고 있다²⁾.

① 未加工 食料品³⁾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食用에 사용하지 않는 農· 林· 畜· 水產物.

1) 단,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賃貸用役,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獨立의 用役과 零稅率 適用 對象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않을 수 있으며 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3년 뒤에 免除適用 申告를 하면 된다.

2) 附加價值稅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과 同法 施行令 제28조~제39조.

3) 未加工 食料品이란,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저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1次 加工을 거쳐 食用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일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유(우유 및 분유 포함), 생선류(고래 포함), 패류, 해조류, 소금, 기타 食用에 사용하는 농· 립· 축· 수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등을 말한다.

- ② 醫療保健用役⁴⁾ 및 血液.
- ③ 教育用役⁵⁾.
- ④ 金融 · 保險用役⁶⁾.
- ⑤ 住宅과 이에 부수되는 土地의 賃貸用役⁷⁾.
- ⑥ 人的用役⁸⁾.
- ⑦ 예술창작품(공동품 제외),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기타 이들과 유사한 행사 등으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것.
- ⑧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 기타 公益 目的의 團體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⁹⁾.
- ⑨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⑩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無償으로 供給하는 재화 또는 용역.

- 4) 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
- 5) 教育用役의 범위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 수강생 · 훈련생 · 교습생이나 청강생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6) 金融 · 保險用役의 範圍는 은행업(성업공사의 사업 포함), 증권업(투자자문업 포함),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전당포업, 환전업, 단기금융업, 상호신용금고업, 신용보증기금업, 시설대여업, 보험업, 기타 금전대부업자의 용역과 기타 이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지 않는 자의 용역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이다.
- 7) 그 範圍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建物과 이에 부수되는 土地로서 그 面積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토지는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의 임대이다.
- 8) 개인 ·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獨立된 事業에 의해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저술가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예술가 · 건축감독 · 요리사 · 접대부 · 운동지도자 등 다수의 용역이 이에 포함된다.
- 9) 이는 등록된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一時的으로 供給하거나 實費 또는 無償으로 供給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 무형문화재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宗教團體의 境內地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賃貸用役,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寮宿舍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을 말한다.

- ⑪ 기타 토지, 수도물, 연탄과 무연탄, 전매품 및 제조담배,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식물원에의 입장 등.

또한 租稅減免規制法上으로 附加價值稅가 免除되는 財貨나 用役의 供給은 다음과 같다¹⁰⁾.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國民住宅 및 當該 住宅의 建設用役.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農業用 또는 漁業用 石油類¹¹⁾, 연안 운항 여객선 밖에 사용할 목적으로 韓國海運組合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그리고 일반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곤란한 島嶼로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水協中央會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③ 工場·鑛山·建設事業現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事業場 등의 구내에서 食堂을 直接 經營하여 공급하는 飲食用役(식사류에 한함).
- ④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農業經營 및 農作業의 代行用役.

2) 財貨의 輸入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財貨의 輸入에 대해서도 附加價值稅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해 附加價值稅를 免除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

10) 租稅減免規制法 제100조 제1항 및 同法 施行令 제96조.

11) 農業用 石油類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선박 중 單位農協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석유류를 말하며, 漁業用 石油類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민·수산업협동조합의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 기초시설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水產業協同組合에 中央會를 통해 공급되는 석유류를 말한다.

가가치세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¹²⁾.

- ① 未加工 食料品¹³⁾.
- ② 학술연구단체 · 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科學 教育 文化用으로 輸入하는 재화¹⁴⁾,
- ③ 종교의식 · 자선 · 구호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 자선단체 또는 보호단체에 寄贈되는 재화¹⁵⁾.
- ④ 조약 · 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재화.
- ⑤ 輸出 후 다시 輸入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¹⁶⁾.
- ⑥ 關稅가 減免되는 재화로서 다시 輸出하는 조건으로 一時 輸入하는 것¹⁷⁾.

12) 附加價値稅法 제12조 제2항 및 同法 施行令 제40조~제46조.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財貨 또는 用役의 輸入도 附加價値稅가 免除된다. 도서 ·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조담배, 외국으로부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寄贈되는 재화, 주거자에게 寄贈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關稅가 免除되는 재화, 이주 ·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재화, 여행자휴대품, 별송품과 수송품으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그 簡易稅率이 적용되는 재화, 輸入하는 상품건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재화,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 전시회 · 품평회 ·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出品하기 위하여 無償으로 輸入하는 물품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재화 등.

13) 輸入 未加工 食料品の 範圍은 註 3)에 규정된 未加工 食料品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食用에 사용하지 않는 農 · 林 · 畜 · 水産物이다. 단, 關稅가 減免되지 않는 食料品으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科學 · 教育 · 文化用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關稅가 減免되는 재화로서 關稅가 輕減되는 分에 한한다.

15) 사원, 기타 宗教團體에 기증되는 물품, 慈善 또는 救護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 등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것.

16) 이는 輸出하거나 우리나라에서 保稅加工하여 返送한 物品을 면허일부터 2년(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 기구는 5년) 내에 再輸入하는 것으로서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 수출물품의 기구로서 再輸入하는 물품, 加工 또는 修理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기타 운수기관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으로서 당해 운수기관의 事故로 인하여 返送된 것 등을 말한다.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分에 한한다.

17)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分에 한한다.

⑦ 關稅가 無稅이거나 減免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¹⁸⁾.

또한 租稅減免規制法上으로 附加價值稅가 免除되는 財貨의 輸入項目은 다음과 같다¹⁹⁾.

① 無煙炭.

② 都市鐵道建設用 物品으로서 國內제작이 곤란한 것²⁰⁾.

18) 이는 다음과 같은 재화를 말한다.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軍需品.
 - 국가원수의 警護用으로 사용할 물품.
 -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勳章, 旗章 또는 이에 준하는 表彰品과 賞牌.
 - 기록문서 기타의 書類.
 - 재외국군 또는 공관으로부터 返送된 公用品.
 - 우리나라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해 해체된 경우 그 解體財 및 裝備品.
 - 우리나라 수출품이 수입국의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輸出物品에 대한 라벨.
 - 항공기의 發着 및 항행의 安全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部分品 및 地上整備用 기계·기구.
 -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運動用具로서 대회참가선수의 訓練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 국경에 건설한 橋梁,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의 建造 또는 修理에 필요한 물품.
 -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가 國際平和奉仕活動 또는 國際親善活動을 위해 寄贈하는 물품.
 - 博覽會,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輸入하는 물품.
 - 정부가 國家安全保護上의 필요에 의해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전파관리용 물품.
 -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輸入免許 前에 變質 또는 損傷된 것.
 -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감면규제법 제외)에 의해 關稅가 減免되는 물품.
 -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구상, 모킵품, 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尖端技術産業 및 防衛産業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關稅가 減免되는 물품(관세법 제28조), 그리고 외국항행 선박 등의 製造用 原料品(관세법 제28조의 4).
 - 障礙人用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기타 關稅의 基本稅率이 無稅인 물품과 關稅의 協定稅率이 無稅인 鐵道用 內燃機關 및 디젤機關車.
 - 한국석유개발공사가 政府備蓄用으로 輸入하는 石油 또는 역청유.
- 다만, 輕減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 租稅減免規制法 제100조 제2항.

20) 단, 關稅가 輕減되는 물품에 한한다.

③ 課稅事業에 利用될 선박 및 보세건설물품.

나. 附加價值稅法上的 附加價值稅 零稅率 適用範圍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制度에 따르면, 附加價值稅法上 다음과 같은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해 零稅率이 적용된다²¹⁾.

- ① 外國에 輸出하는 국내재화.
- ②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外國航行用役.
- ④ 外國에 수출하는 국내재화와 선박 또는 항공기의 外國항행용역을 제 외한 外貨獲得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²²⁾.

21) 附加價值稅法 제11조 및 同法 施行令 제24조~제27조.

22) 이는 다음과 같은 財貨 또는 用役을 말한다.

- 國內에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外國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그러나 國內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外國법인의 경우에는 國內에서 國外的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과 直接契約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國외의 비거주자 또는 外國법인으로부터 外國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輸出業者와 直接 都給契約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國內信用狀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外國을 旅行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國內에 주재하는 外國政府機關, 國際機構, 外國軍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外國人 觀光客 등에게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宿泊用役.
- 外國軍이 駐屯하는 地域 內的 事業者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한 자가 國內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원화로 받고 이를 外國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 우리나라에 駐在하거나 派遣된 外交官 또는 外交使節이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은 음식 및 宿泊用役, 外國公館用 石油類 및 酒類, 그리고 기타 總理命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外國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揭記하는 國際金融機構로부터 國內事業을 위하여 받은 借款資金으로 國際競爭入札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한편 租稅減免規制法上 零稅率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상은 다음과 같다²³⁾.

- ①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防衛產業物資와 非常對備資源管理法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資源動員으로 공급하는 용역.
- ② 국군조직법에 의한 軍隊 또는 機關에 공급하는 石油類.
- ③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都市鐵道建設用役.
- ④ 비료, 농약,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農業用 機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어구 등 農業用機資材, 그리고 障礙人用 보장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主要國 및 EU Directive上的 附加價值稅 免稅 및 零稅率 適用 範圍 比較

<表 1>에서 主要國의 附加價值稅制度上 免稅 範圍를 국가별, 부문별로 살펴보면, 특히 醫療 및 金融部門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教育部門은 프랑스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住宅貸貸 部門은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加工食品, 衣類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있으며 基礎食品, 書籍, 新聞에 대해서는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있으나 零稅率을 적용하는 나라들은 상당수이다. 한편 藥品은 포르

- 外信記者클럽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海外就業勤勞者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해외취업근로자가 면세쿠폰에 의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도받는 것.

23) 租稅減免規制法 제99조 및 同法 施行令 제95조.

〈表 1〉 主要國 및 EU Directive上的 附加價值稅 免稅 및 零稅率 適用 範圍

	基礎食品	加工食品	醫療	藥品	教育	住宅購入	住宅賃貸	衣類	書籍	新聞	娛樂·運動	博物館	政府支出	金融	中古品	農業原料	藝術
英國	Z	Z	X	Z	X	Z	X	Z	Z					X			
프랑스			X			X	X				X			X	X		X
獨逸			X		X	X	X				X	X		X			
벨기에			X		X	X	X			Z				X			
네덜란드			X		X	X	X			Z				X			
룩셈부르크			X		X	X	X							X			
노르웨이			X				X							X			X
덴마크			X		X	X	X			Z		X		X			X
이탈리아	Z		X		X	X	X			Z				X			
스웨덴			X	Z	X		X			Z				X			X
스페인			X		X	X	X					X		X			X X
아일랜드	Z	Z	X	Z	X		X	Z			X		X	X			Z
포르투갈	Z		X	X	X		X	Z		Z	X	X		X			Z X
터키	Z		X		X		X					X		X			
日本			X		X		X							X			
臺灣	X		X	X	X				X	X				X			
EU Directive			X		X		X				X			X			

註：1. X=免稅, Z=零稅率.

2. 이 표는 便宜上 요약한 것임. 예컨대, 아일랜드는 모든 종류의 옷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兒童服과 兒童靴에만 적용하고 있음. 멕시코의 경우는 모든 금융서비스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農業保險과 生命保險의 경우에 免稅하고 있음. 칠레에서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免稅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公式의으로 認定된 限度 內的 費用에 대해서만 적용됨.

資料：Alan A. Tait, Value Added Tax: *International Practice and Problems*, IMF, 1988.

The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Finance, *Guide to ROC Taxes*, 1994.

B.J.M. Terra and A.J. Kajus, *A Guide to the European VAT Directives*, Amsterdam: IBFD Publication BV, 1993.

財政經濟院 稅制室 國際租稅課, 「日本の 稅制概要」, 1993. 3.

투갈과 대만, 政府支出은 아일랜드, 그리고 中古品은 프랑스만이 면세 적용을 하고 있다. 기타 娛樂·運動, 博物館, 藝術 등의 부문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지 않는 경향이 더욱 높다. 그리고 全般的으로 볼 때 주요국들은 品目別로 類似한 附加價值稅 免稅 適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表 1>에서 主要國의 附加價值稅制度上 零稅率 適用 範圍를 국가별, 부문별로 살펴보면, 基礎食品과 新聞 部門에 있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나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별로 보더라도 英國과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있어서는 零稅率 適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국의 경우 全般的으로 零稅率 適用보다 免稅 適用이 더 廣範圍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 도입 역사가 오래되는 EU國家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규정된 EU의 指令(directive) 중 제6차 지령은 향후 EU 각국의 부가가치세제도 변화방향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령상에는 附加價值稅 免稅가 타당한 분야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 公益서비스에 대한 면세분야(제6차지령 제13조)로서 국내원천 부가가치에 대해서 EU국가들은 다음 항목에 관한 면세는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① 공공우편 서비스
- ② 의료(치과 포함) 서비스
- ③ 인체기관, 혈액 및 우유의 공급
- ④ 면세대상 독립단체가 업무수행상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⑤ 사회보장 및 복지 서비스
- ⑥ 청소년 보호 서비스
- ⑦ 청소년 교육, 초·중·고·대학교 교육 및 기타 교육서비스

- ⑧ 초·중·고·대학교의 등록금
- ⑨ 종교기관 또는 철학활동(philosophical) 기관의 서비스
- ⑩ 정치, 노동활동, 종교, 애국, 심신수양, 봉사 등의 비영리기관이 그 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⑪ 비영리기관의 스포츠교육 및 체육교육 서비스
- ⑫ 면세기관의 자금(fund) 확충을 위한 이벤트사업
- ⑬ 환자수송
- ⑭ 공영 라디오 및 TV 서비스

둘째, 其他 면세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 ① 보험서비스
- ② 부동산 임대용역
- ③ 금융서비스
- ④ 국내에서의 우표 공급
- ⑤ 각국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복권 및 도박
- ⑥ 건물(부속부지 포함) 및 건물건축용 부지의 공급
- ⑦ 기타 이상의 면세대상 서비스 제공목적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

단, 각국은 금융서비스, 부동산 임대용역, 건물(부속부지 포함) 및 건물건축용 부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과세선택권(options)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輸入品에 대한 면세분야(제6차지령 제14조)로서 다음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다.

- ① 국내 면세업자가 수입하는 최종수입품
- ② 통과수입품(importation of goods under declaration for transit arrangements)
- ③ 관세 면제 수입품
- ④ 관세 면제를 받은 수출품의 재수입
- ⑤ 군사, 외교, 및 국제기구활동 목적의 수입품
- ⑥ 항구로 반입되는 수산물
- ⑦ 중앙은행이 수입하는 金

한편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면세분야(제6차지령 제25조)와 관련하여서는, EU국가들은 농어민에 대해 輕減稅率을 적용토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 및 EU 指令上的 免稅 適用範圍와 우리나라의 면세 적용범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면세범위가 훨씬 廣範圍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나라들이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는 輕減稅率制度를 택하지 않고 있다.

2. 附加價值稅의 稅收規模

가. 附加價值稅의 稅收規模와 比重

우리나라에 附加價值稅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7년 7월 1일로, 기존의 複雜多岐하였던 間接稅 體系를 單純化·簡素化하는 차원에서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등을 統廢合하여 個別消費稅인 特別消費稅와 함께 一般消費稅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附加價值稅가 總租稅收入과 間接稅收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表 2>와 같다. 부가가치세제도가 실시된 1977년 첫 해에 附加價值稅 稅收가 總租稅 對比 8.2%, 間接稅 對比 23.5%의 낮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나 197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총조세 대비 20% 내외, 간접세 대비 60%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비중은 지금까지 一定한 水準을 유지해 왔으나 附加價值稅가 間接稅와 나아가 總租稅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附加價值稅 稅收는 크게 國內分과 輸入分으로 나누어지며 국내분은 다시 納付稅額과 還給稅額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最終的인 附加價值稅 稅收는 국내분 중에서 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부분과 수입분의 합으로 구성된다.

〈表 2〉 附加價值稅의 稅收規模와 比重

(單位: 百萬元, %)

	總 租 稅		間 接 稅		附 加 價 值 稅		
	金 額	金 額	比重(A)	金 額	比重(A)	比重(B)	
1977	2,959,257	1,028,015	34.7	241,573	8.2	23.5	
1978	4,095,513	1,382,837	33.8	838,907	20.5	60.7	
1979	5,360,748	1,873,439	34.9	1,088,675	20.3	58.1	
1980	6,575,391	2,403,957	36.6	1,471,194	22.4	61.2	
1981	8,172,352	2,916,841	35.7	1,804,760	22.1	61.9	
1982	9,515,641	3,260,133	34.3	2,096,383	22.0	64.3	
1983	11,447,944	3,922,154	34.3	2,559,277	22.4	65.3	
1984	12,408,216	4,256,193	34.3	2,704,272	21.8	63.5	
1985	13,531,369	4,556,995	33.7	2,901,197	21.4	63.7	
1986	15,416,024	5,127,914	33.3	3,272,210	21.2	63.8	
1987	18,536,097	5,735,751	30.9	3,650,479	19.7	63.6	
1988	22,541,161	6,852,269	30.4	4,205,215	18.7	61.4	
1989	26,194,944	8,063,177	30.8	5,260,229	20.1	65.2	
1990	33,214,796	10,384,159	31.3	6,964,419	21.0	67.1	
1991	38,354,984	12,085,207	31.5	8,252,627	21.5	68.3	
1992	44,680,535	15,000,208	33.6	10,076,296	22.6	67.2	

註: 比重(A)는 總租稅 對比 比重, 比重(B)는 間接稅 對比 比重을 나타냄.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 年度.

附加價值稅의 還給 規模는 輸出이나 設備投資에 비례하며 일반적으로 景氣變動과는 反對로 움직이게 된다. 景氣回復 局面의 初期에는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設備投資가 증가하고 따라서 還給稅額의 규모는 늘어난다. 반면에 이 시기에는 納付稅額의 규모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데 이는 소득의 증가가 미미하여서 內需의 增加勢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內분 납부세액과 수입분에 대한 附加價值稅 納付額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納付稅額 規模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還給稅額 規模가 增加하여 附加價值稅 稅收規模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景氣下降 局面의 初期에는 附加價值稅 稅收規

〈表 3〉 附加價值稅의 國內分과 輸入分 比重 推移

(單位: 億圓, %)

	合 計	國 內 分			輸 入 分	占 有 比	
		納 付	還 給	實 稅 收		國 內 分	輸 入 分
1977	2,416	1,451	1,151	300	2,116	12.4	87.6
1978	8,389	6,559	4,760	1,799	6,590	21.4	78.6
1979	10,887	7,960	5,427	2,533	8,353	23.3	76.7
1980	14,712	9,870	6,520	3,350	11,362	22.8	77.2
1981	18,048	12,684	7,963	4,721	13,326	26.2	73.8
1982	20,944	15,825	8,471	7,354	13,589	35.1	64.9
1983	25,592	19,591	9,339	10,252	15,340	40.1	59.9
1984	27,042	21,896	13,245	8,651	18,391	32.0	68.0
1985	29,012	24,116	14,514	9,602	19,410	33.1	66.9
1986	32,722	28,503	17,007	11,496	21,226	35.1	64.9
1987	36,505	33,113	25,679	7,434	29,071	20.4	79.6
1988	42,052	39,194	30,448	8,746	33,306	20.8	79.2
1989	52,602	46,479	29,058	17,421	35,181	33.1	66.9
1990	69,644	59,388	32,926	26,462	43,182	38.0	62.0
1991	82,526	72,542	42,041	30,501	52,025	37.0	63.0
1992	100,763	86,749	39,832	46,917	53,846	46.6	53.4
1993	116,875	101,921	42,800	59,121	57,754	50.6	49.4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 年度.

模는 소득증가율의 둔화로 인한 세수규모의 감소보다 먼저 나타나는 輸出 鈍化와 設備投資 減少로 인한 還給稅額의 減少로 인해 稅收은 오히려 크게 增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附加價值稅 稅收은 景氣變動에 대해 非彈力的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²⁴⁾.

24) 成明宰·金珍珠, 『個別所費稅制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연구보고서 93-08, 韓國租稅研究院, 1993. 12, pp. 44~45.

나. 附加價值稅 稅收比重的 國際比較

〈表 4〉에서는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 稅收比중을 主要國들과 比較해 보았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附加價值稅 稅收比중이 總租稅 對比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獨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16% 내외 수준에서, 그리고 덴마크 (1980년 제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은 18~2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英國은 1980년의 14.4%에서 1992년에는 19.7%로, 그리고 동 기간에 룩셈부르크는 10.8%에서 15.9%로, 스웨덴은 13.4%에서

〈表 4〉 附加價值稅 稅收比중의 國際比較¹⁾

(單位 : %)

	1980	1985	1988	1989	1990	1991	1992
韓 國	22.4	21.4	18.7	20.1	21.0	21.5	22.6
日 本 ²⁾	-	-	-	3.3	4.2	4.4	4.8
臺 灣 ³⁾	6.3	7.8	13.2	11.5	13.2	15.1	15.2
英 國	14.4	15.2	16.7	16.7	16.5	18.6	19.7
獨 逸	16.6	15.8	15.6	15.5	16.6	16.5	16.5
프 랑 스	20.9	19.7	19.3	18.9	18.4	17.5	17.3
벨 기 에	16.8	15.4	15.9	16.3	16.0	16.1	15.6
네 덜 란 드	15.8	16.2	16.5	16.3	16.5	15.6	15.4
룩셈부르크	10.8	12.9	13.8	13.6	13.9	14.9	15.9
오스트리아	20.1	21.0	20.6	21.1	20.8	20.3	19.5
덴 마 크	22.2	20.0	18.2	18.1	18.5	18.3	20.0
스 웨 덴	13.4	14.0	13.4	13.6	14.9	16.7	15.9
이 탈 리 아	15.6	14.5	15.2	14.1	14.7	14.3	13.2
아 일 랜 드	14.8	20.6	20.7	21.6	20.6	19.9	20.1
노 르 웨 이	18.1	18.2	20.0	18.9	18.3	17.5	18.4

註 : 1) 總租稅 對比.

2) 日本이 附加價值稅制度를 導入한 것은 1989年 4月임.

3) 臺灣의 附加價值稅는 一種의 營業稅(business tax)임.

資料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1993, 1994.*

臺灣 財政部 統計處, 『賦稅統計年報』, 1994. 2.

15.9%로 持續的으로 上昇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臺灣의 경우 동 기간에 6.3%에서 15.2%로 急激히 上昇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동 기간에 프랑스는 20.9%에서 17.3%로, 이탈리아는 15.6%에서 13.2%로 持續的으로 下落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日本의 경우 지금까지 5%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 稅收比重은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安定性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水準에 있어서는 1988년의 일부 국가와 1989년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상대국인 臺灣 및 日本과 비교해 볼 때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附加價值稅 免稅制度的 問題點과 全般的인 調整方案

1. 附加價值稅 免稅制度 自體의 問題點

免稅는 사업장 또는 기업을 기본적으로 附加價值稅制度的 밖에 있게 하는 제도로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附加價值稅를 崩壞시키는 역할을 한다. 면세제도의 이러한 기본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면세제도는 실제 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現實의 免稅制度는 재화 및 용역의 特定去來에 적용되는 對物免稅와 特定企業에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現行 附加價值稅制度는 제Ⅱ장에 정리한 바와 같이 未加工 食料品을 포함한 생활필수품, 의료, 금융, 보험, 우편, 전파서비스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免稅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英國, 獨逸, 프랑스 등에 있어서의 免稅範圍를 비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면세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앞서 논의한 대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면세대신 零稅率 또는 輕減稅率 適用이 비교적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特定企業에 대한 免稅는 賣出額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기업이나 農業에 종사하는 기업에 세금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면세기업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위해 기장이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보유의무가 없다. 면세기업은 한마디로 附加價值稅와 無關하다. 특정기업에 대해 면세가 허용되는 것은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이나 농가를 부가가치세제에 포함시킬 경우 稅務行政에 소요되는 費用이 현저히 증대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면세기업제도를 만듬으로 해서 세무행정 비용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면세로 인해 잃는 稅收損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免稅制度는 附加價值稅制度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免稅制度의 가장 중요한 問題點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면세제도가 多段階 非累積의 消費稅로서의 附加價值稅의 基本骨格을 崩壞하는 데 있다. 면세가 最終段階가 아닌 中間段階에 적용되면 다음 단계에서 還收되는 效果(catching-up effect)가 발생한다. 中間단계에 있는 거래자를 면세시키면 최종 단계 거래자의 세부담은 면세시키지 않는 경우보다 더 크게 된다. 이 catching-up effect 혹은 cascading effect는 면세제도뿐만 아니라 零稅率 適用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이를 자세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零稅率制度는 부가가치세 내부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唯一한 非課稅 조치에 대한 제도인데 영세율이 最終 去來段階에 적용되면 非課稅 效果가 의도대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表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最終段階 以前에 적용되는 영세율은 비과세의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다. 영세율 제도하에서 기업이나 사업자는 通常의 課稅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記帳과 稅金計算書 作成의 의무가 부과되며 신고에 의 해 전단계의 납부세액이 還拂된다.

<表 5> 零稅率과 稅額計算

	去來 段階	賣出額	買入額	稅率 (%)	稅額	前段階 稅額	納付 稅額	納付稅額 合計
零稅率을 都賣 段階에서 適用 하는 경우	製造	100	0	10	10	0	10	25
	都賣	150	100	0	0	10	-10	
	小賣	250	150	10	25	0	25	
零稅率을 小賣 段階에서 適用 하는 경우	製造	100	0	10	10	0	10	0
	都賣	150	100	10	15	10	5	
	小賣	250	150	0	0	15	-15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免稅制度가 零稅率처럼 非課稅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는데, 면세는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면세가 비과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음 <表 6>의 예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면 매출세액은 면세에 의해 0이 되는데, 전단계세액공제(환급)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納付稅額이 발생한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免稅가 중간거래단계인 都賣段階에 적용되면 전단계세액공제가 부인되기 때문에 課稅의 累積이 발생하여 納付稅額 合計가 稅額控除 否認額만큼 증대된다. 최종거래단계인 小賣段階에 면세가 이루어져도 전단계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完全한 非課稅 效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免稅에는 전단계세액의 공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表 6> 免稅와 稅額計算

	去來 段階	賣出額	買入額	稅率 (%)	稅額	前段階 稅 額	納付 稅額	納付稅額 合 計
免稅를 都賣 段階에서 適用 하는 경우	製造	100	0	10	10	0	10	35
	都賣	150	100	면세	0	10*	0	
	小賣	250	150	10	25	0	25	
免稅를 小賣 段階에서 適用 하는 경우	製造	100	0	10	10	0	10	15
	都賣	150	100	10	15	10	5	
	小賣	250	150	면세	0	15*	0	

註 : *로 表示된 金額은 還給이 不可能한 것임.

免稅企業이 最終消費者에게 판매할 경우 면세제도는 완전과세제도보다 분명히 租稅輕減을 가져오나 면세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企業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제도가 完全課稅制度보다 稅負擔을 增大시킨다. 왜냐하면 면세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기업이 부담한 買入稅額은 과세기업에게 轉嫁되지만 課稅企業이 다

시 最終消費者에게 판매할 때에는 면세기업으로부터 轉嫁된 稅額을 控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면세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재화는 사실상 重複課稅된다.

면세기업은 가격체계를 왜곡하며 去來過程도 歪曲시킨다. 면세기업이 소매단계에 있는 경우 면세기업이 아닌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競爭上 有利한 위치에 있게 되나 다른 한편 買入稅額控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액보다 買入額이 큰 경우 면세기업은 競爭上 不利하게 된다. 최종단계 이전인 製造 또는 都賣段階의 기업 또는 사업자에게 면세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課稅의 累積이 발생하며 면세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해 免稅企業은 보다 높은 價格을 책정하게 되어 競爭上 不利하게 된다²⁵⁾.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면세기업이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改善策은 기업으로 하여금 免稅企業 또는 登錄課稅企業이 되는지를 選擇하게 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의 개선책은 면세기업으로부터의 買入額에도 控除를 인정하는 것이다.

25) 현재 附加價值稅制中 中間段階에서의 免稅가 消費者 負擔을 증대시키는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17③)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하는 農·林·畜·水産物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買入稅額으로서 控除할 수 있다. 이는 면세재화를 공급받을 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당수당할 세액이 없는데도 법령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買入稅額으로 간주, 賣出稅額에서 控除하여 納付稅額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擬制買入稅額控除라고 한다. 이 제도는 재화의 최종 거래단계 이전의 단계에 면세제도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還收效果(catching-up effect)와 累積效果(cascading effect)를 완화시키는 장치이다. 이 장치가 없으면 면세재화로써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면세단계의 사업자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까지 납세의무를 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農産物 등 생산에 투입된 中間財 價格은 당해 거래단계를 기준으로 그 前 거래단계의 부가가치 산정과 그 後 거래단계의 부가가치 계산에 二重으로 산입되어 累積效果까지 발생함으로써 經濟效率을 歪曲시키게 된다(崔明根, 『附加價值稅法論』, 조세통람사, 1993, p. 314).

2. 附加價值稅 免稅範圍의 全般的인 調整方案

現行 附加價值稅 免稅範圍 設定의 問題點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 政策的 基準에 符合되지 않는 분야에도 면세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면세기 준의 한계를 훨씬 넘는 분야가 계속 면세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課稅主體의 特性에 따른 免稅와 中間財 免稅로 인해 과세불평등을 초래함은 물론 세무행정의 번잡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면세를 附加價值稅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서 二元的으로 規定하고 있어 집행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不合理하다고 할 수 있다.

附加價值稅의 免稅는 부가가치세의 기초를 유지할 뿐 아니라 세무행정상의 문제점과 경제활동의 왜곡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最小限度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도입, 시행된 지 18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부가가치세의 기본골격 형성의 배경이었던 社會·經濟的 環境이 상당히 변화하였으므로 免稅對象의 再調整이 필요하다.

가. 免稅 適用의 政策的 根據

附加價值稅는 一般消費稅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稅負擔의 逆進性 緩和, 복잡한 行政節次의 簡素化 그리고 經濟·社會 政策的 考慮에 의해 例外的으로 免稅를 허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租稅減免의 惠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間接稅의 賦課와 徵收를 免除한다는 뜻으로 事業者를 중심으로 할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附加價值稅를 添加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免稅가 正當化되는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다음 일곱 가지이다.

첫째,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함으로써 低所得層의 相對的 稅負擔을 緩和시킬 수 있다.

둘째, 몇몇 재화는 사회적 관점에서 消費가 勸獎되어야 할 재화(meritorious goods)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책·신문·잡지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몇몇 재화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自然狀態에서 그에 대한 供給이 不足하다고 여겨지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그에 대한 供給이 擴大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인데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의료용역, 국민주택 등에 관련되는 건설용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토지, 근로소득 등의 基本的인 生産要素에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은 附加價值稅의 本質上 課稅하는 것이 不適合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다섯째, 附加價值稅의 適用이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경우인데 금융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여섯째, 특정 재화나 용역에 다른 形態의 課稅, 특히 個別消費稅의 형태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바, 전화세가 부과되는 전화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이다.

일곱째,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는 稅務行政의 便宜를 위하여 면세된다.

물론 특정 재화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 중 하나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 이상의 이유가 복합되어 면세된다. 어린이衣類에 대한 면세는 분배개선과 공급확대 지원 때문이며 住居費 支出에 대해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위의 일곱 가지 이유 중 첫번째, 세번째 및 일곱번째 이유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法 및 租稅減免規制法上的 個別 免稅範圍가 이상의 일곱 가지 正當化 論理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 <表 7> 및 <表 8>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表 7〉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과 關聯한 附加價値稅 免稅의 根據

附加價値稅 免稅項目		附加價値稅 免稅의 根據						
		①	②	③	④	⑤	⑥	⑦
附加價値 稅法上	A	△						○
	B			○				
	C			○				
	D					○		○
	E	△		○	○			
	F							
	G		○			△		△
	H			△				
	I			△				
	J			△				
	K				○			
	L	○			△			
	M	○						
	N						○	
	O						○	
	P		○					
租稅減免 規制法上	Q	△		○				
	R			○				
	S			○				
	T			○				

註: 1. ○는 強한 根據을, △는 弱한 根據을 나타냄.

2. 附加價值稅 免稅의 根據는 다음과 같음.

- ① 所得分配의 逆進性을 緩和시키기 위한 것.
- ② 사회적 觀點에서 消費를 獎勵하기 위한 것.
- ③ 사회적 觀點에서 供給을 獎勵하기 위한 것.
- ④ 부가가치세를 課稅하기에 不適合한 것(노동·자본·토지 등 生産요소).
- ⑤ 부가가치세의 算定이 어려운 것.
- ⑥ 다른 곳에서 課稅(특히 特別소비세).
- ⑦ 稅務行政上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한 것.

3.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과 關聯한 附加價值稅 免稅項目은 다음과 같음.

- A. 未加工 食料品과 우리나라에서 生産된, 食用에 使用하지 않는 農·林·畜·水産物.
- B. 醫療保健用役 및 血液.
- C. 教育用役.
- D. 金融·保險用役.
- E. 住宅과 이에 부수되는 土地의 賃貸用役.
- F. 人的用役.
- G. 예술창작품(공동품 제외),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기타 이들과 유사한 행사 등으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것.
- H.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公益 目的의 단체가 공급하는 財貨 또는 用役.
- I. 國家, 地方自治團體, 地方自治團體組合이 供給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政府業務를 代行하는 단체가 供給하는 재화 또는 용역.
- J. 國家,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無償으로 供給하는 재화 또는 용역.
- K. 土地.
- L. 수돗물
- M. 煉炭과 無煙炭.
- N. 專賣品 및 製造담배.
- O. 郵票·印紙·證紙·福券과 公衆電話.
- P. 圖書館·科學館·博物館·美術館·動植物園에의 入場.
- Q. 대통령령이 정하는 國民住宅 및 당해 주택의 建設用役.
- R. 대통령령이 정하는 農業用 또는 漁業用 石油類,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使用할 目的으로 韓國海運組合에 直接 供給하는 石油類, 그리고 일반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關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제에 使用할 目的으로 水協中央會에 直接 供給하는 石油類.
- S.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準하는 것으로서 勞働者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教育법 제81조에 의한 各급학교(이하 '사업장 등')의 經營자가 그 從業員 또는 學生의 福利厚生을 目的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構內에서 食堂을 直接 經營하여 供給하는 飲食用役(식사류에 한함).
- T.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榮農組合法人과 委託榮農會社가 供給하는 農業經營 및 農作業의 代行用役.

〈表 8〉 財貨의 輸入과 關聯한 附加價値稅 免稅의 根據

附加價値稅 免稅項目		附加價値稅 免稅의 根據						
		①	②	③	④	⑤	⑥	⑦
附加價値 稅法上	A	△						
	B			△				
	C			△				
	D							
	E							○
	F							○
	G							
	H		○					
	I						○	
	J			○				
	K							○
	L							○
	M							○
	N			△				
	O			△				
租稅減免 規制法上	P	○						
	Q			○				
	R			○				

註：1. ○는 強한 根據를, △는 弱한 根據를 나타냄.

2. 附加價値稅 免稅의 根據는 다음과 같음.

- ① 所得分配의 逆進性을 緩和시키기 위한 것.
- ② 사회적 觀點에서 消費를 獎勵하기 위한 것.

- ③ 사회적 관점에서 供給을 獎勵하기 위한 것.
 - ④ 부가가치세를 課稅하기에 不適合한 것(노동·자본·토지 등 생산요소).
 - ⑤ 부가가치세의 算定이 어려운 것.
 - ⑥ 다른 곳에서 課稅(특히 특별소비세).
 - ⑦ 稅務行政上의 便宜를 도모하기 위한 것.
3. 財貨의 輸入과 關聯한 附加價值稅 免稅項目은 다음과 같음.
- A. 未加工 食料品.
 - B.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문화단체가 科學·教育·文化用으로 輸入하는 재화.
 - C.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보호단체에 寄贈되는 재화.
 - D.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재화.
 - E. 輸出後 再輸入하는 재화로 關稅가 減免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F. 關稅가 減免되는 재화로서 다시 輸出하는 조건으로 一時 輸入하는 것.
 - G. 關稅가 無稅이거나 減免되는 財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H. 圖書·新聞 및 雜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I. 製造담배.
 - J. 外國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寄贈되는 재화.
 - K. 住居者에게 寄贈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直接 使用할 것으로 인정되어 關稅가 免除되는 재화.
 - L. 移住, 移民 또는 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재화.
 - M. 여행자휴대품, 별송품과 수송품으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그 簡易稅率이 적용되는 재화.
 - N. 輸入하는 상품건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재화.
 - O.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나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해 無償으로 輸入하는 물품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재화.
 - P. 無煙炭.
 - Q. 都市鐵道建設用 物品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R. 課稅事業에 이용될 선박 및 보세건설물품.

나. 免稅範圍 調整의 基本方向

附加價值稅의 免稅範圍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原則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과세대상, 즉 財貨나 用役의 特性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면세되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원재료 등 중간재를 면세하는 경우 오히려 가격인상을 초래하여 소비자부담의 증가를 야기시키므로 最終消費段階에 면세하여야 한다.

셋째, 經濟循環에 있어서의 中立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 중 一部에만 課稅해서는 안된다.

넷째, 면세 적용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政策的 目標에 符合하며 이 목표와의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면세범위 조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現行 附加 價値稅制度를 살펴보면, 이 一般原則에 符合되지 않는 免稅惠澤 分野로서 人的用役, 教育用役 中 營利目的의 私設 教育用役, 金融·保險用役, 그리고 國家·地方自治團體와 組合이나 政府業務 代行團體가 提供하는 財貨 또는 用役을 들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課稅化해야 할 부문이 人的用役 部門이다.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衡平性의 측면에서나 效率性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므로 서비스에 대한 非課稅는 稅 負擔의 逆進性을 야기시킨다. 또한 부가가치세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免稅는 과세되는 재화에 대한 더 높은 세금부담을 의미하므로 單一稅率로 과세되는 한 稅負擔의 逆進性이 深化된다. 人的用役의 課稅化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營利目的의 私設 教育用役도 인적용역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데 이에 관하여는 제Ⅴ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國家·地方自治團體와 組合이나 政府業務 代行團體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課稅로 전환하여야 하나 이 부문에 대한 과세가 國民生活 全般에 미치는 影響과 課稅의 技術的인 어려움들을 감안할 때 철저한 준비와 연구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과세는 별도의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金融·保險用役은 과세의 技術的 어려움과 또 금융·보험용역은 生産 要素의 하나라는 점에서 非課稅되어 왔으나 금융·보험용역 중 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銀行間 代替서비스 手數料 收入 등은 생산요소에 해

당되지 않으며 과세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금융·보험용역의 과세에 관한 문제를 제Ⅵ장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상의 네가지 부문에는 속하지 않으나 不動產賃貸用役의 非課稅 轉換과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의 課稅轉換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과제이다. 상가·건물 등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현재 과세되고 있으나 이 경우 建物新築 關聯 還給金額의 규모가 커서 오히려 부동산임대용역을 非課稅하는 것이 稅收確保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제Ⅶ장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또 國內生産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면세 적용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外國으로부터 輸入되는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은 課稅되고 있는 현행 제도가 衡平性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Ⅷ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Ⅳ. 人的用役に 대한 課稅方案

1. 人的用役 附加價値稅 免稅制度의 問題點

현재 우리나라에서 附加價値稅 免稅對象이 되는 人的用役은 크게 법
무·회계·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事業서비스와 저술가·조각가·감
독·음악가·직업운동가 등과 같은 自由職業의 用役으로 구분된다²⁶⁾.

이와 같은 人的用役은 勞動用役과 성격이 유사하여 많은 경우 그 구분
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人的用役을 비과세하고 있는 法

2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事業서비스는 ① 法務서비스 (변호사·海事보좌인·공증인·집달리·변리사·사법서사·행정서사용역), ② 會計서비스 (공인회계사·세무사·평가사·통관사(관세사)용역), ③ 技術서비스(기술사·건축사·導船士·설계제도사·측량사용역,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시스템분석용역), ④ 其他(광고·신문支局경영용역, 孵化(축산법에 의해 등록된 부화업자의 부화 제외)·蠶種생산용역, 작명·관상·점술·무당·운명감정용역, 가축·기타 동물훈련용역, 조사 및 정보관련서비스, 복사·청사진용역, 기타 직업소개소·상담소·패션디자이너·자문용역) 등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自由職業 用役은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演藝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제공 제외)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裁斷·무용·요리·바둑교사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⑥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⑦ 보험가입자 모집, 증권매매 권유, 저축 장려 또는 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직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⑧ 著作權 또는 저작권점권의 사용료를 받는 저작·實演·음반제작·방송용역, ⑨ 顧問料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당을 받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사 등의 용역(변호사의 소송대리, 공인회계사의 감사, 세무사의 신고·조정·기장대리, 의사의 진료 등은 제외), ⑩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용역, ⑪ 勤勞所得 및 ①, ⑩ 이외의 업종으로부터 所得 또는 手當을 받는 용역 등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的 취지가 바로 生産要素인 勤勞用役に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논리에서 비롯되는데, 근로용역과 유사한 人的用役に 대해서도 附加價値稅를 免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면세로 열거된 인적용역의 대부분은 구 영업세제하에서 영업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하였으며 營業稅가 非課稅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도 도입과정에서도 면세로 규정되게 되었다.

人的用役을 供給받는 쪽이 事業者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인적용역이 事業者에게 공급되는 경우를 보면, 이론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입요소는 임금·지대·이자·이윤인데 인적용역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의 측면에서는 附加價値 創出의 投入要素로 보아서 인적용역에 과세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賃金과 人的用役의 代價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⁷⁾. 다음으로 인적용역을 消費者가 直接 供給받는 경우에는 그 용역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消費者의 慾望 充足을 위해 바로 소비된다. 인적용역을 면세조치하면 그 인적용역의 소비자는 대부분 담세력이 높은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소비하게 되므로 稅負擔의 逆進性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인적용역이 직접 소비자(비사업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도 課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²⁸⁾.

인적용역의 소비가 消費支出이 큰 계층일수록 늘어나는 것은 <表 9> 및 <表 10>에서 알 수 있다. 이 표들을 볼 때 소비지출이 큰 가계일수록 대체로 총소비지출에 대한 雜費支出²⁹⁾ 比重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7) 賃金은 고용계약에 따른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불이고 人的用役의 代價는 구매 계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공되는 노동서비스 자체는 同質的일 수도 있다.

28) 崔明根, 『附加價値稅法論』, 조세통람사, 1993, p. 245.

29) 人的用役은 사업서비스와 자유직업용역으로 나뉘고, 사업서비스는 法務·회계·기술서비스로 나뉜다. 『도시가계연보』에 의거하여 작성한 <表 9>에서는 雜費 항목이 수수료, 특히 法務手數料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雜費支出이 곧 人的用役に 대한 支出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9〉 全家口의 消費支出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雜費 支出比重 推移

(單位: 千원, %)

지출 계층 (만원)	1989		1990		1991		지출 계층 (만원)	1992		1993	
	가계 지출	잡비 (비중)	가계 지출	잡비 (비중)	가계 지출	잡비 (비중)		가계 지출	잡비 (비중)	가계 지출	잡비 (비중)
20 미만	180.4	13.3 (7.4)	178.1	12.8 (7.2)	189.4	10.5 (5.5)	30 미만	273.9	21.4 (7.8)	268.5	22.7 (8.5)
20~30	283.5	27.2 (9.6)	283.4	25.4 (9.0)	288.8	23.3 (8.1)	30~40	393.6	40.5 (10.3)	417.8	39.2 (9.4)
30~40	383.0	42.7 (11.1)	388.8	40.9 (10.5)	388.7	40.4 (10.4)	40~50	503.1	59.4 (11.8)	505.1	56.3 (11.1)
40~50	495.2	61.8 (12.5)	498.4	59.5 (11.9)	496.2	57.9 (11.7)	50~60	614.4	78.1 (12.7)	613.9	75.5 (12.3)
50~60	603.8	79.0 (13.1)	602.6	76.4 (12.7)	610.9	78.2 (12.8)	60~70	722.9	97.9 (13.5)	724.1	98.7 (13.6)
60~70	714.2	95.2 (13.3)	712.9	94.0 (13.2)	714.3	97.9 (13.7)	70~80	826.7	119.7 (14.5)	834.5	114.8 (13.8)
70~80	836.0	15.7 (13.8)	838.5	115.3 (13.8)	815.7	116.4 (14.3)	80~90	945.3	135.4 (14.3)	947.2	131.1 (13.8)
80~90	936.7	32.5 (14.1)	935.8	131.0 (14.0)	940.7	133.1 (14.1)	90~100	1,054.1	153.3 (14.5)	1,057.9	158.1 (14.9)
90~100	1,053.8	46.1 (13.9)	1,042.0	148.1 (14.2)	1,038.9	148.3 (14.3)	100~110	1,164.7	176.1 (15.1)	1,163.6	175.4 (15.1)
100~110	1,175.6	67.3 (13.2)	1,157.2	159.0 (13.7)	1,152.0	169.7 (14.7)	110~120	1,273.7	197.0 (15.5)	1,280.2	196.3 (15.3)
110~120	1,269.3	86.0 (14.7)	1,271.6	174.4 (13.7)	1,265.7	192.2 (15.2)	120~130	1,382.2	215.4 (15.6)	1,393.8	219.7 (15.8)
120~130	1,328.4	92.2 (14.5)	1,394.0	191.5 (13.7)	1,351.6	202.6 (15.0)	130~150	1,543.5	244.9 (15.9)	1,549.9	243.8 (15.7)
130~140	1,485.5	10.2 (14.2)	1,483.0	204.0 (13.8)	1,471.0	214.5 (14.6)	150~170	1,771.3	269.4 (15.2)	1,750.7	281.2 (16.1)
140~150	1,603.7	13.2 (13.3)	1,580.8	215.1 (13.6)	1,585.1	225.1 (14.2)	170~190	1,969.8	306.0 (15.5)	1,978.4	301.2 (15.2)
150 이상	2,718.5	52.2 (13.0)	2,744.7	358.7 (13.1)	2,681.7	361.1 (13.5)	190 이상	3,445.2	483.8 (14.0)	3,417.5	469.0 (13.7)
평균	657.2	84.1 (12.8)	755.4	97.1 (12.9)	895.8	121.0 (13.5)	평균	1,039.5	147.8 (14.2)	1,130.1	160.3 (14.2)

註: 1. 支出階層은 消費支出 기준임. 단, 家計支出 = 消費支出 + 非消費支出.

2. 雜費는 범무수수료, 손해보험료, 경조비, 종교관계비 등을 포함함.

資料: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表 10〉 家口當 月平均 手數料 支出 推移

(單位: 千圓, %)

	총 소비 지출				수수료지출			
	전 도시		서 울		전 도시		서 울	
	전가구	근로자 가 구	전가구	근로자 가 구	전가구	근로자 가 구	전가구	근로자 가 구
1975	65.3	63.0	66.4	65.1	0.06 (0.09)	0.05 (0.08)	0.06 (0.09)	0.06 (0.09)
1976	81.5	78.9	81.8	81.6	0.07 (0.09)	0.06 (0.08)	0.07 (0.09)	0.06 (0.07)
1977	95.4	93.2	104.0	100.9	0.11 (0.12)	0.12 (0.13)	0.14 (0.13)	0.16 (0.16)
1978	127.7	124.0	142.5	137.4	0.17 (0.13)	0.19 (0.15)	0.28 (0.20)	0.32 (0.23)
1979	173.2	168.3	190.5	185.1	0.21 (0.12)	0.17 (0.10)	0.34 (0.18)	0.22 (0.12)
1980	214.5	207.0	235.1	227.0	0.15 (0.07)	0.17 (0.08)	0.22 (0.09)	0.26 (0.11)
1981	254.5	249.0	276.1	270.3	0.15 (0.06)	0.15 (0.06)	0.18 (0.07)	0.19 (0.07)
1982	251.5	239.1	273.1	252.4	0.24 (0.10)	0.23 (0.10)	0.13 (0.05)	0.29 (0.11)
1983	274.6	264.5	297.6	282.3	0.36 (0.13)	0.41 (0.16)	0.39 (0.13)	0.45 (0.16)
1984	299.4	288.4	327.9	311.4	0.29 (0.10)	0.26 (0.09)	0.25 (0.08)	0.28 (0.09)
1985	322.6	309.6	361.8	345.4	0.30 (0.09)	0.31 (0.10)	0.41 (0.11)	0.42 (0.12)
1986	354.0	339.0	392.7	370.1	0.33 (0.09)	0.38 (0.11)	0.48 (0.12)	0.61 (0.16)
1987	407.0	388.3	451.9	429.9	0.35 (0.09)	0.27 (0.07)	0.38 (0.08)	0.21 (0.05)
1988	476.4	453.9	538.0	508.6	0.62 (0.13)	0.64 (0.14)	0.77 (0.14)	0.89 (0.17)
1989	594.3	561.7	667.1	622.8	0.90 (0.15)	0.80 (0.14)	0.80 (0.12)	0.80 (0.13)
1990	685.7	650.0	740.6	692.9	1.30 (0.19)	1.40 (0.22)	0.80 (0.11)	0.70 (0.10)
1991	818.3	779.6	895.5	847.9	1.20 (0.15)	1.20 (0.15)	1.30 (0.15)	1.40 (0.17)
1992	941.9	902.5	1,025.9	961.9	1.20 (0.13)	1.00 (0.11)	1.30 (0.13)	1.30 (0.14)
1993	1,021.0	986.2	1,143.3	1,094.3	1.50 (0.15)	1.40 (0.14)	1.60 (0.14)	1.20 (0.11)

註: ()안은 總消費支出 對比.

資料: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各 年度.

또한 <表 10>에서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法務서비스 등의 手數料에 대한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지출규모가 큰 서울가구가 지출규모가 작은 전도시가구보다 지출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代價를 받고 공급하는 인적용역 중에는 課稅行政上 또는 納稅順應上 그 課稅가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 있고(예컨대, 접대부·댄서의 용역) 國民厚生的 또는 文化關聯的인 人的用役도 혼재해 있다. 이러한 인적용역은 그 본질상 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社會政策的, 文化政策的인 측면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代價를 받고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향후 選別的 免稅로 전환하면서 그 範圍가 상당부분 縮小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用役業은 單純 勤勞用役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중 自由職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외한 法務·會計·技術서비스 등의 事業서비스는 여타 財貨의 供給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이러한 인적용역들 중 法務·會計서비스 등은 高所得層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稅負擔의 逆進性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課稅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2. 外國의 制度

主要國의 人的用役에 대한 課稅概要를 살펴보면 <表 1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거의 모든 주요국들은 인적용역에 대해서 一般稅率로 課稅하고 있으며 스포츠, 藝術 또는 著作活動에 대해서는 免稅適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노르웨이는 모든 인적용역에 대해 면세 적용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변호사 공증인 집달리의 법무서비스에 한해 면세적용하고 있다.

EU 지령상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적용역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는 일부 EU 국가들도 이 분야에 대한 면세적용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表 11〉 主要國의 人的用役に 대한 課稅概要

	自由職業 用役	법 무 서비스	회 계 서비스	기 술 서비스
英 國	과세	과 세	과 세	과 세
獨 逸	과세(극장, 오케스트라·실내악·합창 등의 음악활동, 문화·스포츠행사기관의 용역은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프 랑 스	과세(작가·작곡가·화가·조각가 등의 예술활동은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벨 기 에	과세(작가·음악가·영화제작자의 활동은 면세)	과세(변호사·공증인·집달리는 면세)	과 세	과 세
네덜란드	과세(작가·작곡가·저널리스트의 용역은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룩셈부르크	과세(비영리기관의 예술·문화활동은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오스트리아	과세(작가·작곡가·저널리스트의 용역은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덴 마 크	과세(직업운동가<자동차경주 제외>, 작가·작곡가 등 예술활동가<음악연주 제외> 등의 용역은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스 웨 덴	과세(콘서트·서커스·연극·오페라·발레 공연 등의 입장료 및 프로그램 판매, 영화제작 관련용역은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이탈리아	과세	과 세	과 세	과 세
아일랜드	과세(연극·음악공연<서커스 포함>, 스포츠행사의 추진 및 수용행위는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노르웨이	면세(프로젝트 설계, 제도, 건설·기술보조 용역, 건축설계·장식설계·가구배치 등 건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이·미용 용역 등은 과세)	면 세	면 세	면 세
EU Directive	과세	과 세	과 세	과 세
日 本	과세(학술·문화관련 서비스는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臺 灣	과세(학술·문화관련 서비스는 면세)	과 세	과 세	과 세

註: '課稅'는 一般稅率에 의한 課稅를 나타냄.

資料: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alue Added Taxation in Europe*, Vol. 1~3, Oct. 1992.

B.J.M. Terra and A. J. Kajus, *A Guide to the European VAT Directives*, Amsterdam: IBFD Publication BV, 1993.

五南出版公司, 『新編六法全書』, 臺灣, 1993. 12.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日本の 稅制概要』, 1993. 3.

3. 人的用役 免稅制度의 改編方案

人的用役의 非課稅에 따른 問題點과 EU 지령 및 外國의 制度를 참고할 때 인적용역 중 아래의 용역들은 課稅로 轉換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法務서비스: 변호사·海事보좌인·공증인·집달리·변리사·사법서사·행정서사 용역.
- ② 會計서비스: 공인회계사·세무사·평가사(감정사)·통관사(관세사)용역.
- ③ 技術서비스: 기술사·건축사·導船士·설계제도사·측량사 용역, 시스템분석 용역.
- ④ 其他: 상담소·직업소개소 용역.

다만, 용역업 중 學術研究用役, 技術研究用役은 技術開發 支援의 政策的 차원에서 課稅轉換 對象에서 除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自由職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도 勤勞類似用役으로서 현행대로 免稅措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人的用役의 課稅轉換時 豫想되는 問題點으로는 法務·會計·技術서비스 등 주로 事業者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우선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역에서 稅收效果를 크게 기대하지 못하면서 事業者에게 節次上 不便만 주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두번째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規模가 큰 一般課稅者인 경우에는 買入稅額 控除로 稅負擔을 지지 않으면서도 과세특례자나 면세사업자 등 小規模事業者인 경우에는 稅負擔을 지게 되어 課稅衡平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租稅摩擦이 야기될 수도 있다.

한편 人的用役의 경우 附加價値率이 小賣 등의 약 4배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으므로(평균 70% 이상으로 예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유형의 구분기준은 일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年間 賣出額 3,600萬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같이 900萬원

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人的用役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現在 附加價値稅 免稅對象이 되는 人的用役을 課稅轉換할 경우 豫想되는 稅收效果는 1991년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리 중개업의 부가가치율 43.8%를 적용할 경우 <表 12>와 같다. 法務·會計·技術서비스로부터는 586億원의 추가세수가, 그리고 自由職業 用役

<表 12> 人的用役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單位: 名, 百萬元)

	人 員	收 入 金 額	稅 收 效 果
辯 護 士	1,841	209,194	9,162
辨 理 士	168	21,419	938
法 務 士	2,322	66,652	2,919
公 認 會 計 士	658	33,452	1,465
稅 務 士	2,473	267,138	11,701
關 稅 士	333	91,324	4,000
導 船 士	85	15,782	604
建 築 士	3,530	596,448	26,124
技 術 士	248	38,754	1,697
小 計	11,658	1,340,163	58,610
歌 手	185	5,028	220
俳優·탈런트	561	27,527	1,206
藝 術 家	355	17,822	781
職 業 運 動 家	696	15,456	677
集 金 人	179,685	1,159,287	50,777
其 他	30,459	396,890	1,738
小 計	211,941	1,622,010	55,399
總 計	223,599	2,962,173	114,009

註: 1. 1991年度 免稅事業者 收入金額 基準임.

2. 稅收效果 算出은 代理·仲介業의 附加價値率 43.8%를 適用하였음.

資料: 財政經濟院 稅制室 消費稅課.

으로부터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554億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 따라서 1996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法務·會計·技術서비스로부터의 직접적인 세수증가는 1천억원 이상이 예상된다³⁰⁾(연평균 매출신장률 15% 기준).

30) 다만 여기서 인적용역이 과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의 買入稅額控除額을 차감하여야 한다. 이 규모는 推計가 곤란하나 경우에 따라서 직접적인 세수증가 규모를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稅收增加 效果는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國家全體의 稅收入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人的用役 분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이 분야 용역제공자들의 課標 陽性化를 강제하게 되고,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所得稅 納付稅額을 增加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V. 教育用役に 대한 課稅方案

1. 教育用役に 대한 附加價値稅 免稅制度의 問題點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附加價値稅 免稅對象이 되는 教育用役의 범위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훈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기술·지식을 가르치는 용역”으로 정의함으로써 公·私立學校法人 이외의 營利團體에서 제공하는 教育用役까지도 免稅範圍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公·사립학교법인 이외의 營利團體에서 제공하는 외국어·스포츠 등의 教育用役은 그 수요가 주로 高所得層이며 公·사립학교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區分하여 課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득층일수록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教育費支出의 比重이 큰 것은 <表 13>에서 읽을 수 있다.

교육비 비중, 특히 학원 등 사설교육용역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되는 補充教育費에 관한 통계는 지출계층별로 분류된 <表 13>에서는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表 14>에서와 같이 서울과 전도시, 그리고 전가구와 근로자가구로는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소비지출이 많은 서울가구가 전도시가구에 비해, 그리고 전가구가 근로자가구에 비해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補充教育費 支出比重이 더욱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外國人投資開放 5個年計劃」에 따라 1995년부터는 航空, 造船, 建築, 纖維 등 15개 업종의 專門學院을 외국인지분 50% 미만, 대

표자가 한국인일 것 등을 조건으로 開放하게 되고 지분을 49% 이내에서 각 시도별로 1개씩의 外國語學院 설립을 허용하며 또 入試學院을 개방하는 등 私設教育 部門의 開放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私設教育用 役に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轉換의 重要性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表 13〉 全家口의 消費支出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教育費 支出比重 推移

(單位: 千원, %)

지출 계층 (만원)	1989		1990		1991		지출 계층 (만원)	1992		1993	
	가계 지출	교육비 (비중)	가계 지출	교육비 (비중)	가계 지출	교육비 (비중)		가계 지출	교육비 (비중)	가계 지출	교육비 (비중)
평균	657.2	45.5 (6.9)	755.4	55.4 (7.3)	895.8	67.3 (7.5)	평균	1,039.5	84.5 (8.1)	1,130.1	92.6 (8.2)
20 미만	180.4	4.3 (2.4)	178.1	5.1 (2.9)	189.4	5.7 (3.0)	30 미만	273.9	8.2 (3.0)	268.5	6.6 (2.5)
20~30	283.5	9.8 (3.5)	283.4	9.9 (3.5)	288.8	9.1 (3.2)	30~40	393.6	14.6 (3.7)	417.8	15.4 (3.7)
30~40	383.0	17.2 (4.5)	388.8	17.3 (4.4)	388.7	15.6 (4.0)	40~50	503.1	23.2 (4.6)	505.1	23.2 (4.6)
40~50	495.2	27.1 (5.5)	498.4	27.5 (5.5)	496.2	26.2 (5.3)	50~60	614.4	33.6 (5.5)	613.9	33.8 (5.5)
50~60	603.8	40.4 (6.7)	602.6	39.1 (6.5)	610.9	35.6 (5.8)	60~70	722.9	46.0 (6.4)	724.1	42.2 (5.8)
60~70	714.2	48.9 (6.8)	712.9	51.9 (7.3)	714.3	45.9 (6.4)	70~80	826.7	60.7 (7.3)	834.5	55.5 (6.7)
70~80	836.0	60.5 (7.2)	838.5	63.5 (7.6)	815.7	59.5 (7.3)	80~90	945.3	70.5 (7.5)	947.2	67.3 (7.1)
80~90	936.7	76.2 (8.1)	935.8	71.8 (7.7)	940.7	72.2 (7.7)	90~100	1,054.1	86.0 (8.2)	1,057.9	77.4 (7.3)
90~100	1,053.8	86.1 (8.2)	1,042.0	89.5 (8.6)	1,038.9	81.5 (7.8)	100~110	1,164.7	92.8 (8.0)	1,163.6	94.6 (8.1)
100~110	1,175.6	98.3 (8.4)	1,157.2	101.4 (8.8)	1,152.0	94.5 (8.2)	110~120	1,273.7	111.4 (8.7)	1,280.2	107.6 (8.4)
110~120	1,269.3	128.0 (10.1)	1,271.6	115.5 (9.1)	1,265.7	104.2 (8.2)	120~130	1,382.2	123.7 (8.9)	1,393.8	112.9 (8.1)
120~130	1,328.4	137.4 (10.3)	1,394.0	146.0 (10.5)	1,351.6	123.9 (9.2)	130~150	1,543.5	141.0 (9.1)	1,549.9	138.0 (8.9)
130~140	1,485.5	170.6 (11.5)	1,483.0	139.1 (9.4)	1,471.0	140.1 (9.5)	150~170	1,771.3	178.8 (10.1)	1,750.7	168.1 (9.6)
140~150	1,603.7	178.8 (11.1)	1,580.8	171.0 (10.8)	1,585.1	170.2 (10.7)	170~190	1,969.8	247.5 (12.6)	1,978.4	209.4 (10.6)
150 이상	2,718.5	226.9 (8.3)	2,744.7	235.8 (8.6)	2,681.7	246.6 (9.2)	190 이상	3,445.2	336.3 (9.8)	3,417.5	362.6 (10.6)

註: 支出階層은 消費支出 기준임. 단, 家計支出 = 消費支出 + 非消費支出.

資料: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表 14〉 家口當 月平均 補充教育費 支出 推移

(單位: 千원, %)

	총 소비 지출				보충 교육비			
	전 도시		서 울		전 도시		서 울	
	전가구	근로자 가 구	전가구	근로자 가 구	전가구	근로자 가 구	전가구	근로자 가 구
1975	65.3	63.0	66.4	65.1	0.2 (0.3)	0.2 (0.3)	0.3 (0.5)	0.4 (0.5)
1976	81.5	78.9	81.8	81.6	0.4 (0.4)	0.3 (0.4)	0.4 (0.5)	0.4 (0.5)
1977	95.4	93.2	104.0	100.9	0.5 (0.5)	0.5 (0.5)	0.7 (0.6)	0.6 (0.6)
1978	127.7	124.0	142.5	137.4	0.8 (0.6)	0.8 (0.6)	1.2 (0.9)	1.1 (0.8)
1979	173.2	168.3	190.5	185.1	1.4 (0.8)	1.2 (0.7)	2.0 (1.0)	1.8 (1.0)
1980	214.5	207.0	235.1	227.0	1.6 (0.7)	1.4 (0.7)	2.0 (0.8)	1.8 (0.8)
1981	254.5	249.0	276.1	270.3	1.3 (0.5)	1.2 (0.5)	1.7 (0.6)	1.5 (0.6)
1982	251.5	239.1	273.1	252.4	1.9 (0.7)	1.5 (0.6)	2.7 (1.0)	2.3 (0.9)
1983	274.6	264.5	297.6	282.3	2.6 (0.9)	2.2 (0.8)	3.7 (1.2)	3.4 (1.2)
1984	299.4	288.4	327.9	311.4	3.3 (1.1)	2.9 (1.0)	4.9 (1.5)	4.3 (1.4)
1985	322.6	309.6	361.8	345.4	3.9 (1.2)	3.4 (1.1)	5.7 (1.6)	4.9 (1.4)
1986	354.0	339.0	392.7	370.1	4.5 (1.3)	3.9 (1.1)	6.0 (1.5)	4.9 (1.3)
1987	407.0	388.3	451.9	429.9	5.8 (1.4)	5.0 (1.3)	7.8 (1.7)	6.8 (1.6)
1988	476.4	453.9	538.0	508.6	8.4 (1.8)	7.5 (1.7)	11.5 (2.1)	9.7 (1.9)
1989	594.3	561.7	667.1	622.8	14.7 (2.5)	12.1 (2.2)	20.3 (3.0)	16.1 (2.6)
1990	685.7	650.0	740.6	692.9	22.3 (3.3)	18.5 (2.8)	30.0 (4.1)	24.4 (3.5)
1991	818.3	779.6	895.5	847.9	28.4 (3.5)	23.6 (3.0)	37.2 (4.2)	30.1 (3.5)
1992	941.9	902.5	1,025.9	961.9	36.5 (3.9)	32.1 (3.6)	47.5 (4.6)	41.4 (4.3)
1993	1,021.0	986.2	1,143.3	1,094.3	39.3 (3.8)	34.9 (3.5)	53.7 (4.7)	48.6 (4.4)

註: () 안은 총소비지출 대비 비중임. 「보충교육비」는 1981년 이전에 「학원비」로 분류되었음.

資料: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2. 外國의 制度

현재 主要國들은 營利目的의 教育用役(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피아노 학원 등)에 대해서 一般稅率로 課稅하고 있다(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비영리 목적의 교육용역은 면세).

〈表 15〉 主要國의 教育用役에 대한 課稅概要

	營利教育	非營利教育
英 國	과 세	비 과 세
獨 逸	과 세	비 과 세
프 랑 스	과 세	비 과 세
벨 기 에	과 세	비 과 세
네 달 란 드	과 세	비 과 세
룩 섴 부 르 크	과 세	비 과 세
오 스트 리 아	과 세	비 과 세
덴 마 크	과 세	비 과 세
스 웨 덴	과 세	비 과 세
이 탈 리 아	과 세	비 과 세
아 일 랜 드	과 세	비 과 세
노 르 웨 이	과 세	비 과 세
EU Directive	과 세	비 과 세
日 本	과 세	비 과 세
臺 灣	과 세	비 과 세

資料 :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alue Added Taxation in Europe*, Vol. 1~3, Oct. 1992.

The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Finance, *Guide to ROC Taxes*, 1994.

B.J.M. Terra and A.J. Kajus, *A Guide to the European VAT Directives*. Amsterdam: IBFD Publication BV, 1993.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日本の 稅制概要』, 1993. 3.

그리고 EU 지령에서도 EU국가들은 청소년 교육, 초·중·고·대학교 교육 및 기타 훈련서비스와 비영리기관의 스포츠교육 및 체육교육 서비스 등 비영리 공공교육에 대해서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면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교육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세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教育用役 免稅制度의 改編方案

教育用役의 非課稅에 따른 問題點과 外國의 制度를 참고할 때 非營利法人이 아닌 私設學院 등의 營利團體가 제공하는 외국어 스포츠 등의 教育用役은 課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教育用役으로 구분되는 서비스는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훈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기술·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중 事業性을 띤 教育用役에 대해서는 課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의한 교육용역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공계통의 技術系 學院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이들 용역의 제공자가 營利團體라 하더라도 이러한 용역의 공급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 분야의 교육용역은 例外的으로 非課稅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분야의 교육용역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소득을 지닌 자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教育用役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현재 비영리교육을 대표하는 국내 私設學院의 系列別 分類에 의거하여 이들의 定員別 規模를 보면 事務系(주산·부기·타자학원), 文理系(외국어·입시학원), 藝能系(피아노·미술학원 등), 技術系, 家庭系

(요리학원), 綜合學院(문리계와 사무계를 병행) 및 讀書室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특히 <表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계열인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및 사무계의 總 受講可能 人員은 연간 최대 약 1억 600만명인데, 실제로는 充員率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실제로는 이들 계열들에 있어서 연간 약 3,530만명이 영리교육단체의 教育서비스를 1년에 평균 한달 정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이들이 系列別로 時間當 月平均 4만원~4만 5천원의 受講料를 지불하고 하루에 1.5~4.5時間씩의 서비스를 제공받다고 할 때 이들의 年間 受講料는 총 4조 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表 16> 私設學院의 主要 教育用役に 대한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¹⁾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사무계	계
A. 학원수(個所)	4,964	6,774	17,101	20,020	48,859
B. 연간 정원(명) ²⁾	31,117,500	12,724,392	17,497,440	44,555,568	105,894,900
C. 실제수강인원(명) ³⁾ (B×33.3%)	10,372,500	4,241,464	5,832,480	14,851,856	35,298,300
D. 시간당 평균수강료 ⁴⁾ (만원)	4.5	4.5	4.5	4.0	
E. 1인당 평균수강시간 (시간)	4.5	2.0	1.5	2.0	
F. 수강료총액(억원) (C×D×E)	21,004.3	3,817.3	3,936.9	11,881.5	40,640.0
G. 예상세수효과(억원) (F×10%)×50% ⁵⁾	1,050.2	190.9	196.9	594.1	2,032.0

註: 1) 기타 가정계와 종합학원 등은 제외하며 학원수와 인원은 1994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수강시간 및 수강료는 1995년 2월 현재 기준임.

2) 최대 수용가능한 인원을 말함.

3) 총원율을 수용가능 인원의 33.3%로 가정할 때의 실제 수강인원임.

4) 신고가격 기준이며, 실사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음.

5) 부가가치율 50% 가정.

資料: 교육부 제공 자료를 근거로 자체 작성함.

국내 영리교육단체의 主要 系列別 教育用役に 대한 課稅轉換時 예상되는 稅收效果는 부가가치율 50%를 가정할 경우 2천억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수강료는 일반적으로 實査價格보다 낮은 申告價格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적인 세수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I. 金融 및 保險서비스에 대한 課稅方案

1. 金融 및 保險서비스에 대한 免稅制度의 問題點

현행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法은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金融·保險用役은 非課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¹⁾. 금융 및 보험용역을 면세하는 이유는 무엇을 부가가치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概念上의 問題點과 行政的 어려움 그리고 금융 및 보험용역의 과세가 貯蓄을 沮害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31) 附加價値稅法 施行令 제33조에 의하면 免稅되는 金融·保險用役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金融·保險用役은 다음 각호에 揭記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 은행업
 - ㉡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88. 12. 31 개정))
 - ㉢ 신탁업
 - ㉣ 증권투자신탁업
 - ㉤ 전당포업
 - ㉥ 환전업
 - ㉦ 단기금융업
 - ㉧ 상호신용금고업
 - ㉨ 신용보증기금업
 - ㉩-2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91. 12. 31 개정)
 - ㉪ 보험업
 - ㉫ 기타 금전대부업
-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以外의 事業을 하는 자가 主된 事業에 附隨하여 동향의 금융·보험용역과 同一 또는 類似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韓國產業銀行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銀行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가. 銀行의 貸出

금융기관은 핵심적 활동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金錢 貸借機關이다.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금전을 借入하여 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확장을 통하여 通貨를 創造하며, 금전을 貸出하여 대출받은 자로부터 利子를 受取한다.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貸出利子와 예금주에게 支給하는 利子の 差額이다. 만약에 예금주가 이미 事業者登錄을 한 사업자뿐이라면, 은행은 이들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利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고 또한 貸出利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며, 예금주에게 지급한 稅額은 控除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방법은 製造業者나 販賣業者에게 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

金融用役に 대하여도 一般製造業者와 同一하게 課稅하는 경우를 金融用役に 대하여 免稅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다소 逆說의인 결과가 보여진다. 금융용역에 대하여 課稅하는 경우에는 <表 17>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경우 정부의 租稅收入은 1만 7천원이며 상품의 小賣價格은 18만 7천원이 된다.

〈表 17〉 金融用役に 대한 課稅 結果

(單位: 원)

	VAT제외가격	VAT	환급VAT	지급VAT
제조업자의 원자재 구입비용: 55,000	50,000	5,000	0	5,000
제조업자의 은행지급이자: 11,000	10,000	1,000	0	1,000
제조업자의 판매액: 110,000	100,000	10,000	6,000	4,000
도매업자의 판매액: 143,000	130,000	13,000	10,000	3,000
소매업자의 판매액: 187,000	170,000	17,000	13,000	4,000
계				17,000

그러나 金融用役に 대하여 非課稅하는 경우에는 <表 18>의 결과가 초래된다. 이 경우 정부의 租稅收入은 1만 7,330원이 되며 상품의 小賣價格은 18만 7,330원이 된다.

<表 18> 金融用役に 대한 非課稅 結果

(單位: 원)

	VAT제외가격	VAT	VAT환급	지급VAT
제조업자의 원자재구입비용: 55,000	50,000	5,000	0	5,000
제조업자의 은행지급이자: 10,300	10,300	300	0	300
제조업자의 판매액: 110,330	100,300	10,030	5,000	5,030
도매업자의 판매액: 143,330	130,300	13,030	10,030	3,000
소매업자의 판매액: 187,330	170,300	17,030	13,030	4,000
계				17,330

이처럼 金融用役に 대하여 附加價值稅를 非課稅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용한 설비투자나 기타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300원)를 還給받지 못한다. 은행은 이를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자의 지급이자율의 상승을 통하여 稅負擔을 轉嫁시킴으로 cascading effect를 유발시켜서 최종단계의 상품의 소비자가격이 오히려 課稅時의 價格보다 높아지게 되는 逆說的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문제는 利子は 지대, 임금, 이윤 등과 함께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生産要素로서 부가가치세의 課稅源으로 除外시켜 왔다는 점이다. 또 C.S. Shoup이나 C.E. Steuerle 같은 학자들도 利子が 生産要素에 대한 代價가 아니라 未來의 消費를 現在의 消費로 바꾸어주는 데 대한 代價로서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유발시키지 않으므로 課稅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³²⁾. 그러나 美 財務省의 『1984 稅制改革 報

32) C.S. Shoup, *Principles of National Income Analysis*, 1947, pp. 105~106;

告書』는 미래 소비를 현재로 앞당기는 기능 자체를 效用을 增大시키는 生産活動의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利子에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가 타당하다고 보았다³³⁾.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시의 또 다른 문제는 은행의 예금주 가운데 대부분이 사업자가 아니라 貯蓄性預金이나 定期預金을 하는 個人이라는 데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예금주는 事業者登錄을 한 附加價値稅의 納稅義務者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利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個人 예금주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事業者인 예금주에게만 은행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예금주좌가 ‘事業上’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지 또는 ‘個人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지에 따라 個人 예금주는 달리 취급받게 된다.

利子에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가 所得階層別로 어떤 稅負擔을 가지게 될 것인가는 <表 19>를 참고할 수 있다.

<表 19>에서는 高所得層일수록 總家計支出에서 차지하는 利子費用 支出의 比重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가계지출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므로 所得 對比 利子費用 支出의 比重은 강하게 所得에 反比例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利子에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는 所得分配에 逆進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銀行의 其他 서비스에 대한 課稅方案

金融機關은 핵심적인 금융기능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手數料를 받기도 한다. 잔고가 일정금액 이상인

C.E. Steuerle, *Taxes, Loans, and Inflation: How the Nation's Wealth Becomes Misallocated*, 1985, p. 47.

33)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Treasury, *3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1984, p. 51.

〈表 19〉 全家口의 消費支出 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利子 支出比重 推移

(單位: 千圓, %)

지출 계층 (만원)	1989		1990		1991		지출 계층 (만원)	1992		1993	
	가계 지출	이자 (비중)	가계 지출	이자 (비중)	가계 지출	이자 (비중)		가계 지출	이자 (비중)	가계 지출	이자 (비중)
평균	657.2	6.5 (1.0)	755.4	7.6 (1.0)	895.8	8.8 (1.0)	평균	1,039.5	11.6 (1.1)	1,130.1	14.2 (1.3)
20 미만	180.4	2.3 (1.3)	178.1	1.7 (1.0)	189.4	4.0 (2.1)	30 미만	273.9	5.2 (1.9)	268.5	4.1 (1.5)
20~30	283.5	3.3 (1.2)	283.4	2.7 (1.0)	288.8	3.5 (1.2)	30~40	393.6	5.7 (1.4)	417.8	5.8 (1.4)
30~40	383.0	4.3 (1.1)	388.8	4.0 (1.0)	388.7	4.4 (1.1)	40~50	503.1	7.5 (1.5)	505.1	8.5 (1.7)
40~50	495.2	5.9 (1.2)	498.4	6.1 (1.2)	496.2	5.6 (1.1)	50~60	614.4	7.8 (1.3)	613.9	8.6 (1.4)
50~60	603.8	7.3 (1.2)	602.6	6.8 (1.1)	610.9	6.8 (1.1)	60~70	722.9	9.0 (1.2)	724.1	11.6 (1.6)
60~70	714.2	8.1 (1.1)	712.9	8.0 (1.1)	714.3	7.9 (1.1)	70~80	826.7	9.8 (1.2)	834.5	12.3 (1.5)
70~80	836.0	8.7 (1.0)	838.5	10.6 (1.3)	815.7	9.3 (1.1)	80~90	945.3	13.3 (1.4)	947.2	16.7 (1.8)
80~90	936.7	7.5 (0.8)	935.8	11.3 (1.2)	940.7	9.8 (1.0)	90~100	1,054.1	12.3 (1.2)	1,057.9	16.2 (1.5)
90~100	1,053.8	10.4 (1.0)	1,042.0	11.6 (1.1)	1,038.9	11.5 (1.1)	100~110	1,164.7	14.3 (1.2)	1,163.6	14.8 (1.3)
100~110	1,175.6	12.5 (1.1)	1,157.2	10.9 (0.9)	1,152.0	11.4 (1.0)	110~120	1,273.7	15.7 (1.2)	1,280.2	14.3 (1.1)
110~120	1,269.3	13.5 (1.1)	1,271.6	14.7 (1.2)	1,265.7	14.2 (1.1)	120~130	1,382.2	17.4 (1.3)	1,393.8	14.9 (1.1)
120~130	1,328.4	12.9 (1.0)	1,394.0	13.1 (0.9)	1,351.6	9.8 (0.7)	130~150	1,543.5	19.4 (1.3)	1,549.9	18.8 (1.2)
130~140	1,485.5	9.9 (0.7)	1,483.0	11.8 (0.8)	1,471.0	12.6 (0.9)	150~170	1,771.3	21.3 (1.2)	1,750.7	23.0 (1.3)
140~150	1,603.7	5.6 (0.3)	1,580.8	12.3 (0.8)	1,585.1	15.7 (1.0)	170~190	1,969.8	20.3 (1.0)	1,978.4	27.4 (1.4)
150 이상	2,718.5	13.6 (0.5)	2,744.7	14.9 (0.5)	2,681.7	17.5 (0.7)	190 이상	3,445.2	17.3 (0.5)	3,417.5	24.9 (0.7)

資料: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예금주에 대한 당좌예금 개설과 같은 서비스는 預金利子에 의하여 결산되기 때문에 手數料를 받지 않고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 예컨대 타은행으로의 계좌이체, 대여금고 운영, 수표책 공급, 중개활동 등은 直接 手數料를 받고 제공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生産要素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서비스는 課稅되어야만 하고 또한 課稅가 可能하다. 비록 大部分의 利子が 免稅되더라도 이러한 附隨의 活動 때문에 金融기관은 여전히 事業者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 保險用役に 대한 課稅方案

保險用役의 課稅對象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보험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주된 서비스가 무엇이나 하는 것에서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 貯蓄性의 성격이 없는 非生命保險의 경우 保險會社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危險의 共同化(risk pooling)와 관련한 金融的 仲介(financial intermediation)이다. 이러한 금융적 중개서비스의 가치를 保險約條金(premiums)과 支給額(claims)의 差로써 측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상적으로는 課稅對象이 廣範圍하여야 하므로 保險會社의 附加價値에 대하여 課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한 課稅에는 稅額控除法의 적용이 적합하지 못하다. 보험회사의 收入保險料에 대한 課稅는 확실히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받는 保險金에 대하여는 課稅하기 곤란할 것이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시 대리납부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死亡給付金이나 健康保險金에 대한 課稅에 대하여는 反對輿論이 비등할 것이다.

모든 EU회원국에서는 제6차 지령에 의하여 保險去來에 대하여 免稅하고 있다³⁴⁾. 따라서 보험회사의 保險用役 供給에 대하여는 課稅되지

34) 6th Council Directive of 17 May 1977, Article 13, B(b).

않고 동 용역의 공급에 관련되는 買入稅額도 控除되지 않게 된다. 保險用役に 대한 免稅效果는 金融用役に 대한 免稅效果와 비슷하다. 免稅事業者와 最終消費者는 保險用役을 免稅로 供給함으로써 이익을 보게 되지만 保險會社가 買入稅額控除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重複課稅 문제 때문에 과세사업자에 대한 영향은 그 반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稅額控除法에 의할 경우 保險產業의 附加價値는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EU의 몇몇 국가들은 保險用役을 附加價値稅에서 免除시키되 특별히 保險稅 課稅對象으로 하고 있다.

2. 外國의 金融 및 保險서비스에 대한 課稅制度

主要 外國의 金融 및 保險서비스에 대한 課稅制度는 <表 2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金融서비스를 보면 벨기에와 臺灣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를 免稅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에도 금융서비스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예치, 신용업무 등은 면세조치되고 있다. 다만,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은 금융서비스를 모두 면세해 주는 것은 아니며 免稅의 例外條項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터키는 은행 및 보험 부문이 銀行 및 保險去來稅(banking and insurance transaction tax)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한편 保險서비스도 臺灣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免稅適用하고 있다. 특히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터키는 保險서비스가 保險稅 과세대상이므로 면세되는 경우이다.

EU 지령에서는 EU 국가들은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免稅適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납세자에게 課稅選擇權(options)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表 20〉 主要國의 金融 및 保險서비스에 대한 課稅概要

	金 融 서 비 스	保 險 서 비 스
英 國	면 세	면 세
獨 逸	면 세	면 세 ⁷⁾
벨 기 에	과 세 ¹⁾	면 세 ⁷⁾
프 랑 스	면 세 ²⁾	면 세
네 덜 란 드	면 세	면 세
룩셈부르크	면 세	면 세
오스트리아	면 세	면 세 ⁷⁾
덴마크	면 세 ³⁾	면 세
스웨덴	면 세 ⁴⁾	면 세
이탈리아	면 세	면 세
아일랜드	면 세	면 세
노르웨이	면 세	면 세
포르투갈	면 세	면 세
터키	면 세 ⁵⁾	면 세 ⁷⁾
EU Directive	면 세 ⁶⁾	면 세 ⁶⁾
日 本	면 세	면 세
臺 灣	과 세	과 세 ⁸⁾

- 註 : 1) 단, 기금예치와 신용카드 발행, 상업어음 할인, 계좌이체 등 신용업무는 면세.
 2) 리스사용료, 금융연구용역에 대한 사용료, 컨설팅비용에 대한 사용료, 금고사용료 등은 과세.
 3) 증권 등의 예약 및 관리, 신탁관리, 신용보증 및 금고사용료 등은 과세.
 4) 단, 신탁관리와 금고사용료 등은 과세되며 증권부문은 인쇄물 형태로 거래될 때 과세함.
 5) 은행, 은행업자 및 보험회사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은행 및 보험거래세 과세대상이며 Financial Leasing Law에 적용되는 서비스의 공급은 면세됨.
 6) 단, 납세자에게 과세선택권을 부여함.
 7) 보험세(insurance tax) 과세대상임.
 8) 단, 재보험은 경감세율 1%로 과세함.

資料 :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alue Added Taxation in Europe*, Vol. 1-3, Oct. 1992.

B.J.M. Terra and A.J. Kajus, *A Guide to the European VAT Directives*, Amsterdam: IBFD Publication BV, 1993.

五南出版公司, 『新編六法全書』, 臺灣, 1993. 12.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日本の 稅制概要』, 1993. 3.

3. 改編方案

課稅의 公平 및 中立이라는 관점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合理的 課稅方案이 강력히 요청되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概念 및 稅務行政上의 어려움 때문에 금융 및 보험용역에 대한 免稅를 課稅로 轉換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금융, 보험업이 教育稅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重複課稅란 비난이 제기될 것이며 이들 특별한 세금을 廢止할 것인가 또는 다른 부분에 비해 금융, 보험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教育稅法上 금융·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수익의 0.5%만을 教育稅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교육세를 통한 세부담은 금융·보험용역을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약하다고 보여지므로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교육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附加價值稅 課稅로 인한 重複課稅의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대안으로는 銀行의 利子收入, 銀行의 其他手數料收入 그리고 保險收入에 課稅하는 방법과 利子收入과 手數料收入만 課稅하는 방법 그리고 手數料收入에만 과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銀行의 手數料收入에만 과세하고 銀行의 利子收入과 保險用役に 대한 과세는 세무행정상 간편함과 저축형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非課稅하는 것이다.

4.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銀行의 手數料收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1992년 기준으로 약 925억원의 稅收가 예상되며 은행의 手數料收入과 利子收入 그리고 保險用役に 대하여 모두 과세하는 경우

에는 銀行用役에서 5,250억원, 保險用役에서 6천억원 정도의 稅收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1조 1천억원 이상의 稅收增加가 예측된다.

〈表 21〉 銀行部門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單位: 億원)

	수 익				비 용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이자수입	72,944	91,075	103,662	지급이자	52,300	65,087	71,639
보증료등 수수료수입(A)	7,039	8,858	10,185	지급수수료 (B)	667	770	931
신탁수익등 기타수입	7,838	9,082	12,842	기타지급	1,041	1,242	1,587
계(C)	87,821	109,015	126,689	계(D)	54,008	67,099	74,157
(A)×10%	704	886	1,019	(B)×10%	67	77	93
(A)×10% - (B)×10%	637	809	925				
(C)×10%	8,782	10,902	12,669	(D)×10%	5,401	6,710	7,416
(C)×10% - (D)×10%	3,381	4,192	5,253				

註: 특수은행을 제외한 一般銀行 기준.

資料: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銀行經營統計』, 1993.

〈表 22〉 保險部門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1992)

(單位: 億원)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계
보 험 금(A)	175,881	48,457	224,338
보 험 료(B)	226,414	57,807	284,221
(B)×10%-(A)×10%	5,053.3	935	5,988.3

資料: 保險監督院, 『保險統計年鑑』, 1993.

Ⅶ. 不動產賃貸用役に 대한 課稅方案

1. 現行 附加價値稅法上 不動產賃貸用役に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

우리나라에서는 附加價値稅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賃貸用役은 非課稅된다³⁵⁾.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³⁶⁾에는 모든 不動產 賃貸用役に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으나, 1980년에 國保委 常任委員會에서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의 일환으로 附加價値稅 課稅를 勸告하였고, 1980년도에 법개정을 통해 1981년 1월 1일부터 庶民保護라는 측면에서 住宅과 이에 부수되는 土地의 賃貸用役に 대해서는 계속 免稅하되³⁷⁾ 상

35) 附加價値稅法 施行令 제34조에 의하면 非課稅되는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賃貸用役 範圍는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常時住居用(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建物(이하 '住宅'이라 한다)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그 面積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土地의 賃貸로 본다.

② 賃貸住宅에 附加價値稅가 課稅되는 事業用 建物(이하 '事業用 建物'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賃貸 範圍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住宅의 賃貸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土地賃貸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住宅의 賃貸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土地의 面積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比率를 곱하여 계산하며, 그 範圍는 제1항과 같다.

36)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不動產賃貸用役に 대하여 3.5%의 營業稅를 과세하였다.

37) 또한 住宅의 賃貸用役に 대해 課稅하는 경우 納稅者數가 엄청나서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가· 건물 등의 不動產賃貸用役은 課稅로 轉換하였다.

庶民保護라는 측면에서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非課稅는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消費支出 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月賃의 支出比重이 消費支出이 늘어날수록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表 23> 全家口의 消費支出 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月賃 支出比重 推移

(單位: 千원, %)

지출 계층 (만원)	1989		1990		1991		지출 계층 (만원)	1992		1993	
	가계 지출	월세 (%)	가계 지출	월세 (%)	가계 지출	월세 (%)		가계 지출	월세 (%)	가계 지출	월세 (%)
평균	657.2	13.2 (2.0)	755.4	14.7 (1.9)	895.8	17.5 (2.0)	평균	1,039.5	19.3 (1.9)	1,130.1	19.3 (1.7)
20 미만	180.4	10.0 (5.5)	178.1	8.1 (4.5)	189.4	8.0 (4.2)	30 미만	273.9	10.6 (3.9)	268.5	8.9 (3.3)
20~30	283.5	14.0 (4.9)	283.4	13.9 (4.9)	288.8	14.2 (4.9)	30~40	393.6	18.3 (4.6)	417.8	14.0 (3.4)
30~40	383.0	15.0 (3.9)	388.8	15.9 (4.1)	388.7	17.6 (4.5)	40~50	503.1	19.8 (3.9)	505.1	18.8 (3.7)
40~50	495.2	13.9 (2.8)	498.4	16.9 (3.4)	496.2	17.3 (3.5)	50~60	614.4	19.6 (3.2)	613.9	18.9 (3.1)
50~60	603.8	14.8 (2.5)	602.6	16.2 (2.7)	610.9	19.7 (3.2)	60~70	722.9	21.2 (2.9)	724.1	20.2 (2.8)
60~70	714.2	13.3 (1.9)	712.9	16.3 (2.3)	714.3	19.4 (2.7)	70~80	826.7	19.1 (2.3)	834.5	21.4 (2.6)
70~80	836.0	12.4 (1.5)	838.5	15.3 (1.8)	815.7	19.0 (2.3)	80~90	945.3	19.4 (2.1)	947.2	20.6 (2.2)
80~90	936.7	12.6 (1.3)	935.8	13.8 (1.5)	940.7	18.5 (2.0)	90~100	1,054.1	20.0 (1.9)	1,057.9	20.7 (2.0)
90~100	1,053.8	10.9 (1.0)	1,042.0	13.6 (1.3)	1,038.9	17.0 (1.6)	100~110	1,164.7	19.8 (1.7)	1,163.6	21.8 (1.9)
100~110	1,175.6	11.6 (1.0)	1,157.2	13.5 (1.2)	1,152.0	17.2 (1.5)	110~120	1,273.7	16.4 (1.3)	1,280.2	19.5 (1.5)
110~120	1,269.3	7.6 (0.6)	1,271.6	14.3 (1.1)	1,265.7	15.6 (1.2)	120~130	1,382.2	19.1 (1.4)	1,393.8	19.1 (1.4)
120~130	1,328.4	8.2 (0.6)	1,394.0	11.6 (0.8)	1,351.6	17.9 (1.3)	130~150	1,543.5	18.7 (1.2)	1,549.9	18.9 (1.2)
130~140	1,485.5	12.4 (0.8)	1,483.0	12.1 (0.8)	1,471.0	14.6 (1.0)	150~170	1,771.3	16.4 (0.9)	1,750.7	17.0 (1.0)
140~150	1,603.7	6.4 (0.4)	1,580.8	12.3 (0.8)	1,585.1	15.6 (1.0)	170~190	1,969.8	14.6 (0.7)	1,978.4	17.7 (0.9)
150 이상	2,718.5	7.5 (0.3)	2,744.7	8.2 (0.3)	2,681.7	15.8 (0.6)	190 이상	3,445.2	28.6 (0.8)	3,417.5	23.1 (0.7)

資料: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한편 <表 2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不動產賃貸事業者는 1993년 현재 一般事業者 및 特例事業者를 합하여 27만 5,158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제한 實際稅額은 1,07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납세자의 대부분은 特例事業者이나 이들로부터의 實稅收는 一般事業者로부터 거두어 들인 實稅收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表 24> 不動產賃貸事業者 現況(1993)

(單位: 名, 億원)

구 분	인 원	과 표	세 수		
			납부세액	환급세액	실 세 수
계	275,158	74,860	3,798	2,721	1,077 ¹⁾
일 반	40,189	51,099	3,534	2,721	813
법 인	6,584	27,131	1,701	1,042	659
개 인	33,605	23,968	1,833	1,679	154
특 례	234,969	23,761	264	0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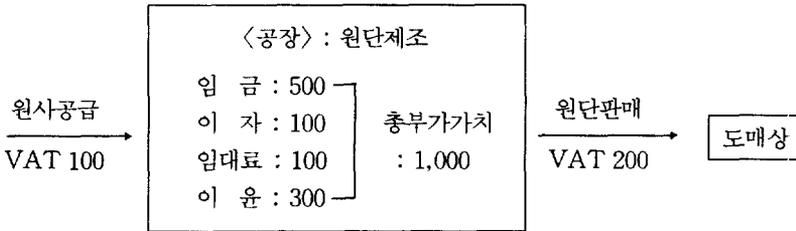
註: 1) 엄밀하게는 이 세수규모에서 不動產用役을 공급받은 자가 買入稅額으로 控除 받은 액수를 차감해야 한다. 그러나 그 규모는 부동산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인가에 달려 있는데, 이 규모는 추정이 어렵다.

資料: 財政經濟院 消費稅制課

가. 免稅에서 課稅로 轉換할 때의 問題點

不動產賃貸用役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론상 이에 대한 과세는 二重課稅라는 점에서 문제시되며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에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즉, 지대·임금·이자 등은 生産要素로서 다른 財貨·用役의 價値를 增大시키는 수단, 다시 말해 그 자체가 附加價値를 形成하는 요소이므로 法理上으로는 免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데, 그 근거가 되는 예를 살펴 보면 [圖 1]과 같다.

[圖 1] 地代·賃金·利子 等の 免稅 根據에 대한 例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물공장의 附加價値稅는 100[매출세액(200) - 매입세액(100)]으로서 이는 總附加價値 1,000에 대한 附加價値稅 100과 동일하다. 따라서 부가가치 형성요소의 일부인 賃賃料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形式論理的인 것이다. 賃賃料에 대해 別途로 課稅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 부담은 원사구입시의 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원단판매시의 세액에서 還給되므로 賃賃料에 대한 二重課稅 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

다른 문제점은 부동산임대용역의 課稅標準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利子相當額이며 이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면서도 이 거래에 대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賃賃人이나 賃借人에게 歸着된다. 따라서 이는 最終消費者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지워져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基本原則에 違背된다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는 건물신축 관련 還給金額만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의 納付稅額 보전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建物新築 및 買入時 一時에 巨額의 還給이 發生하는 문제점이 있다. 강남구 소재 건물을 임의로 선정하여 어느 조사에서는 新築關聯 還給稅額이 향후 5년간의 納付稅額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나. 課稅에서 免稅로 轉換할 때 豫想되는 問題點

不動產賃貸用役に 대한 課稅를 免稅로 轉換할 때 豫想되는 問題點으로는 우선 법시행 이후 새로이 형성된 既存秩序의 再調整으로 인한 새로운 摩擦이 豫想된다. 이들 再調整 事項으로는 건축중인 임대사업용부동산의 건축관련 매입세액의 환급분에 대한 환수문제, 기존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면세전환으로 인한 납부세액 재계산문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사업자간의 계약경신 등을 들 수 있다. 또 課稅에서 免稅로 轉換함에 따라 不動產賃貸事業者에게 惠澤을 주게 된다는 여론의 비난소지가 있고 다음으로 稅源管理上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선형세목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과세표준 관리가 없을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 관리에도 어려움이 豫想된다. 마지막으로 中間段階의 免稅로 인한 累積效果가 발생하는데 이는 事業者에게 제공되는 不動產賃貸用役に 대하여 免稅할 경우에는 賃借者가 부담한 買入稅額이 去來相對方에게 轉嫁됨으로써 생긴다.

2. 外國의 課稅制度

主要國의 不動產賃貸서비스에 대한 課稅制度를 살펴보면, <表 2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住居用 不動產의 賃貸서비스는 오스트리아와 臺灣이 課稅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免稅 適用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사무실 등 商業用 不動產의 賃貸서비스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과세 또는 면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住居用의 경우와 같이 商業用 不動產의 임대서비스에 대해서도 10%의 輕減稅率로 課稅하고 있다. 특히 英國은 商業用의 경우 면세와 과세 중 택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EU 지령을 살펴 보면, EU국가들은 주거용과 상업용의 구분이 없이 모든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해서 각국의 실정에 맞게 부가가치세

〈表 25〉 主要國의 不動產賃貸서비스에 대한 課稅概要

	住 居 用	商業用(건물·사무실)
英 國	면 세	면세와 과세 중 선택
獨 逸	면 세	면 세
벨 기 에	면 세	과 세
프 랑 스	면 세	과 세 ³⁾
네 델 란 드	면 세	면 세
룩셈부르크	면 세	면 세
오 스트 리 아	과 세 ¹⁾	과 세 ¹⁾
덴 마 크	면 세	면 세
스 웨 덴	면 세	면 세
이 탈 리 아	면 세	과 세
아 일 랜 드	면 세	면 세
노 르 웨 이	면 세	면 세
포 르 투 갈	면 세	면 세
터 키	면 세	과 세
EU Directive	면 세 ²⁾	면 세 ²⁾
日 本	면 세	면 세
臺 灣	과 세	과 세

註 : 1) 경감세율 10%로 과세.

2) 단, 납세자에게 과세선택권을 부여함.

3) 농업용은 면세.

資料 :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alue Added Taxation in Europe*, Vol. 1~3, Oct. 1992.

B.J.M. Terra and A.J. Kajus, *A Guide to the European VAT Directives*, Amsterdam: IBFD Publication BV, 1993.

五南出版公司, 『新編六法全書』, 臺灣, 1993. 12.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日本の 稅制概要』, 1993. 3.

를 면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납세자에게 과세선택권(options)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改編方案

不動產賃貸用役に 대한 課稅時에 新築建物에 대한 還給으로 인하여 稅收가 줄어든다는 논리에서 免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써 면세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 또 과세로 賃貸料가 上昇하는 부작용은 부가가치세가 다른 모든 상품에 미치는 一般的인 效果이므로 특별히 임대료를 면세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또 부동산임대용역이 附加價値를 創出하는 要素所得의 하나라는 점에서 免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도 지나치게 形式論理的이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를 면세로 전환할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制度改編 過程中的 過渡期的인 현상이므로 제도가 정착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문제점들이다. 따라서 이 또한 과세 또는 면세를 결정하는 중요 논리가 될 수 없다.

不動產賃貸用役의 과세나 면세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면세시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전체, 나아가서는 소득세의 課稅標準 管理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新築建物에 대한 附加價値稅 還給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임대용역(상가, 건물)으로 부터의 稅收入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부가가치세의 課稅標準 管理는 所得稅와 法人稅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은 全體租稅制度의 機能 여부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같이 볼 때, 不動產賃貸用役은 現行대로 課稅하는 것이 최선의 方案이다. 하나의 대안은 現行대로 과세를 하다가 향후 教育稅法의 改正時 不動產賃貸用役에 대해 教育稅를 과세하고 現行 附加價値稅를 廢止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유는 부동산임대용역은 성질상 要素所得的인 要因이 있는 金融保險用役과 유사하며 따라서 金融保險用役에 教育稅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로 不動産賃貸用役에도 教育稅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부가가치세로 인한 不動産賃貸事業者에 대한 還給問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買入稅額控除를 받을 수 없는 교육세가 부과될 때 신축 또는 취득건물의 賃貸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미 控除된 買入稅額을 추정한다면 이에 따른 租稅摩擦이 야기될 수 있다³⁸⁾. 또 教育稅 부과시 稅源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제도처럼 還給되는 것이 아니므로 教育稅는 課稅標準 管理機能을 수행하지 못할 것인바, 教育稅 課稅方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4. 不動産賃貸用役 免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商街 및 建物에 대한 不動産賃貸用役을 免稅로 轉換할 경우 1993년 기준으로 약 67억원의 稅收增加가 예상되었는바, 이는 賃貸事業者 免稅로 인한 稅收減少가 1,268억원이며 賃借者 買入稅額 不控除로 인한 稅收增加가 1,335억원으로서 그 差額에 해당되는데 임차자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稅收增加 效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를 고려하여 單純按分한 수치이다. 즉, 사실상 과세특례자, 면세사업자, 최종소비자에게 임대한 분과 간주임대료분에 대한 세액만이 세수의 증가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8) 건축시 還給받은 買入稅額을 추정한다면 그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추징세액 = 환급받은 매입세액 × (1 - 경과과세기간수 × 10/100)」; 그러므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건물의 임대 대해서는 추징세액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건축시 買入稅額을 還給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있는바, 이들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Ⅷ.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課稅方案

1. 附加價値稅法上 免稅對象 農·林·畜·水産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未加工 食料品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農·林·畜·水産物에 대해 附加價値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다. 未加工 食料品이란 가공되지 않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저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本來의 性質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1次 加工을 거쳐 食用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일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유(우유 및 분유 포함), 생선류(고래 포함), 패류, 해조류, 소금, 기타 식용에 사용하는 농·림·축·수산물과 單純加工 食料品 등을 말한다³⁹⁾

또한 우리나라는 輸入되는 未加工 食料品에 대해서도 免稅를 적용하고 있다.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위와 같이 분류되는 미가공 식료품 중에서 關稅가 減免되지 않는 식료품으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두,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는 제외한다. 그러나 輸入農産物 중에서 食用으로 使用되지 않는 農·林·畜·水産物은 과세하고 있다.

〈表 26〉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現行 附加價値稅 課稅體系

	國內農産物	輸入農産物
未加工 食料品	면 세	면세(단,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코코아두 및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는 과세)
加工 食料品	과 세	과 세
非食用 農·林·畜·水産物	면 세	과 세

39) 未加工 食料品の 分類는 〈附錄 I〉의 〈附表 1〉을 참조.

2. 農·林·畜·水産物 附加價値稅 免稅의 問題點

未加工 食料品을 비롯한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稅 適用은 부가가치세가 가진 單純比例稅率의 일반소비세적 성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稅負擔 逆進性的의 緩和裝置로 채택되어진 제도로 알려져 있다. 消費支出이 늘수록 食料品費 支出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表 27>을 통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非食用 農·林·畜·水産物⁴⁰⁾에 대해서까지 免稅하는 것은 이 비식용 농·림·축·수산물이 결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低所得層 稅負擔 輕減의 논리로서는 설명될 수 없다. 이 부문의 면세는 그러한 제1차 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즉 농어민이 영세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기장, 세액계산, 신고납부 등 제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納稅便宜 내지 租稅 行政上의 고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만일 未加工 食料品에 대한 稅負擔을 완전히 없애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零稅率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어민이 기장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零細性 때문에 기장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미가공 食料品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시행되고 있는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免稅(課稅) 制度는 未加工 食料品에 대한 경우 國內生産 未加工 食料品이나 輸入 未加工 食料品에 모두 적용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의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國內生産品에 대해서는 非課稅되고 輸入品에 대해서는 課稅토록 되어 있어 최근 韓·美間 課稅衡平의 문제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때 國內農産物을 課稅轉換할 경우 위에서 설명

40)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의 예로 목재, 모피 등을 들 수 있다.

한 바와 같이 농어민에게 기장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부담시키
게 되어 반발이 예상되고 輸入農産物을 非課稅하는 경우 상당히 큰 규모
의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등 두 가지 방안 모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農産物에 대한 附加價値稅 課稅上의 差等이 UR協定の 國際的
Norm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우선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이것이 UR협정에
위배될 경우 국내농산물을 과세전환하는 방법과 수입농산물을 비과세하는
방법을 경제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表 27〉 全家口의 消費支出階層別 家口當 月平均 食料品費 支出比重 推移

(單位: 千원, %)

지출 계층 (만원)	1989		1990		1991		지출 계층 (만원)	1992		1993	
	가계 지출	식료품 (비중)	가계 지출	식료품 (비중)	가계 지출	식료품 (비중)		가계 지출	식료품 (비중)	가계 지출	식료품 (비중)
평균	657.2	189.5 (28.8)	755.4	219.5 (29.1)	895.8	256.9 (28.7)	평균	1,039.5	283.0 (27.2)	1,130.1	298.4 (26.4)
20 미만	180.4	72.1 (40.0)	178.1	74.3 (41.7)	189.4	74.2 (39.2)	30 미만	273.9	106.7 (39.0)	268.5	103.3 (38.5)
20~30	283.5	107.7 (38.0)	283.4	111.4 (39.3)	288.8	114.8 (39.8)	30~40	393.6	148.6 (37.8)	417.8	144.8 (34.7)
30~40	383.0	140.9 (36.8)	388.8	147.1 (37.8)	388.7	148.8 (38.3)	40~50	503.1	180.3 (35.8)	505.1	176.6 (35.0)
40~50	495.2	169.5 (34.2)	498.4	177.3 (35.6)	496.2	181.4 (36.6)	50~60	614.4	212.1 (34.5)	613.9	208.9 (34.0)
50~60	603.8	193.7 (32.1)	602.6	206.8 (34.3)	610.9	212.7 (34.8)	60~70	722.9	239.3 (33.1)	724.1	236.2 (32.6)
60~70	714.2	216.8 (30.4)	712.9	231.3 (32.4)	714.3	239.5 (33.5)	70~80	826.7	265.6 (32.1)	834.5	263.3 (31.6)
70~80	836.0	242.4 (29.0)	838.5	253.8 (30.3)	815.7	265.9 (32.6)	80~90	945.3	295.8 (31.3)	947.2	289.1 (30.5)
80~90	936.7	260.1 (27.8)	935.8	277.6 (29.7)	940.7	291.3 (31.0)	90~100	1,054.1	313.3 (29.7)	1,057.9	310.1 (29.3)
90~100	1,053.8	273.0 (25.9)	1,042.0	295.1 (28.3)	1,038.9	316.2 (30.4)	100~110	1,164.7	333.8 (28.7)	1,163.6	332.7 (28.6)
100~110	1,175.6	294.3 (25.0)	1,157.2	317.2 (27.4)	1,152.0	333.5 (28.9)	110~120	1,273.7	348.2 (27.3)	1,280.2	354.6 (27.7)
110~120	1,269.3	308.5 (24.3)	1,271.6	328.8 (25.9)	1,265.7	347.1 (27.4)	120~130	1,382.2	369.5 (26.7)	1,393.8	371.0 (26.6)
120~130	1,328.4	328.4 (24.7)	1,394.0	339.7 (24.4)	1,351.6	364.6 (27.0)	130~150	1,543.5	391.6 (25.4)	1,549.9	395.1 (25.5)
130~140	1,485.5	339.8 (22.9)	1,483.0	369.6 (24.9)	1,471.0	384.9 (26.2)	150~170	1,771.3	419.0 (23.7)	1,750.7	427.2 (24.4)
140~150	1,603.7	356.2 (22.2)	1,580.8	374.1 (23.7)	1,585.1	393.0 (24.8)	170~190	1,969.8	440.2 (22.3)	1,978.4	466.0 (23.6)
150 이상	2,718.5	434.4 (16.0)	2,744.7	450.5 (16.4)	2,681.7	469.5 (17.5)	190 이상	3,445.2	551.5 (16.0)	3,417.5	556.7 (16.3)

資料: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3.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差等課稅의 UR協定 違背 與否

WTO協定 附屬書 중 農産物 關聯 協定案으로는 GATT 1994協定文과 農産物 協定案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의 差等課稅가 UR協定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외에 UR補助金 및 相計關稅 協定案은 UR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서 국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보조금의 규모와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보조금에 대한 구체절차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협정안이다. 農産物에 대한 補助金은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의 제3조와 제5조 등에서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을 정의할 때 농산물협정에서 규정된 경우가 제외됨을 밝혔다. 따라서 農産物에 대한 補助金은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の 規律 對象에서 除外되며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差等課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가. GATT 1994協定文

GATT 1994協定文은 1947년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간 협정안인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1947협정안)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일부 수정된 협정을 포함하여 WTO協定の 附屬書類로 편성되어 있다. GATT 협정상 내국세 및 규제에 관한 內國民待遇 規定(제17조)은 일방체약국의 상품이 타방체약국의 영역 내에 輸入되는 경우 상대체약국은 동종의 內國商品에 직·간접적으로 부과하는 內國稅 또는 기타 모든 과징금의 限度를 超過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輸入品에 賦課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비추어 輸入 非食用 農産物에 대한 差等課稅가 國際的으로 問題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GATT 1994協定文은 구체적으로 어떤 例外條項이나 어떤

節次를 거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規定을 지니지 않는 宣言의인 의미의 국제적 합의문이므로 상대적으로 施行令의 성격이 강한 農産物協定案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 農産物 協定案

農産物 協定案은 모든 농업·농촌개발, 농업생산자에 대한 정부지원 및 농산물 수출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협정안에서 인정되는 보조금만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동 협정에서는 輸出補助金을 농산물의 수출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키는 국가의 직접보조, 저가수출, 유통비용 및 수송비 지원 등의 보조금들로 정의하고 향후 10년간 금액 및 물량 기준으로 각각 36%와 21%를 감축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國內農業補助金은 減縮對象補助金과 許容對象補助金으로 구분하여 減縮對象補助金은 價格支持 및 生産에 관계되는 보조금(단, 총생산량의 5% 미만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감축이 면제됨)으로서 향후 10년간 13.3% 감축하며 許容對象補助金은 재해구조, 농어민연금제, 의료·교육지원 등 價格支持 效果가 없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동 협정 제1조 用語의 定義 조항에서 租稅減免額도 재정지출에 포함시키고 있고 附屬書Ⅱ에서 補助金의 減縮 約束이 免除되는 國內補助政策의 要件을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 등이 없거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附加價值稅의 差等課稅로 인해 수입 농산물과 국내생산물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減縮對象補助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租稅政策을 통한 農業支援은 計量化가 곤란하므로 협정대상에서 除外함으로써 WTO의 規律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美國, EU國家들의 주장이 개진된 바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아직 協定書에 수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그 귀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 UR協定文 檢討 結論

輸入農産物과 國內農産物에 대한 附加價値稅 差等課稅는 앞서 본 바와 같이 農産物 協定案과 GATT 1994協定文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差等課稅 問題는 장기적으로 國際慣行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정내용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細部規定의 마련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주목해 보아야 하겠다. 施行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지 않더라도 差等課稅는 GATT 1994協定文의 정신에 어긋난 것은 명백하므로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아니더라도 주요 교역상대국이며 농산물교역의 주요 이해당사국인 美國이 이를 계속 문제삼을 수 있다. 따라서 長期的으로는 모든 農産物을 課稅로 轉換하는 방안과 輸入農産物을 免稅하는 방안을 비교·검토해 보고 그 對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外國의 制度

主要國의 未加工 食料品에 대한 課稅現況을 살펴보면 <表 28>과 같다. 즉, 英國이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 대부분 零細率을 적용하고 덴마크가 正規稅率 25.0%로, 그리고 日本이 축산물에 대해 正規稅率 3.0%로 과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국들이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 모두 輕減稅率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臺灣의 경우에는 미가공 식료품을 免稅 適用하고 있다. 또 EU의 제6과 지령에서도 EU 국가들은 모든 農·林·畜·水産物에 대해 輕減稅率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農民과 農産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도상의 취급에 있어서 독특한 제도 중의 하나가 벨기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定率補償制度이다. 예컨대, 벨기에에서는 正常稅率 19.5%와는 다른 輕減稅率 6.0%로 농산물이 과세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正常課稅와 非課稅 중에서 擇一할 수 있도록

〈表 28〉 主要國의 未加工 食料品에 대한 課稅現況

		未加工 食料品	正規稅率
英	國	대부분 영세율	17.5%
獨	逸	경감세율 7%	15.0%
프	랑 스	경감세율 5.5%	18.6%
벨	기 에	경감세율 6%	19.5%
네	덜 란 드	경감세율 6%	17.5%
룩	셈 부 르 크	경감세율 3%	15.0%
오	스 트 리 아	경감세율 10%	20.0%
덴	마 크	정규세율로 과세	25.0%
스	웨 덴	경감세율 18%	25.0%
이	탈 리 아	경감세율 4%	19.0%
아	일 랜 드	경감세율 12.5% ¹⁾	21.0%
노	르 웨 이	경감세율 11.11% ²⁾	20.0%
EU	Directive	경감세율	-
日	本	정규세율로 과세	3.0%
臺	灣	면세	5.0%

註: 1) 周邊의 氣溫보다 높은 溫度의 食料品에 대해서만 適用되며 그 밖의 食料品은 一般課稅됨.

2) 漁夫에 의한 魚類販賣에 대해서만 適用됨.

資料: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alue Added Taxation in Europe*, Vol. 1~3, Oct. 1992.

The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Finance, *Guide to ROC Taxes*,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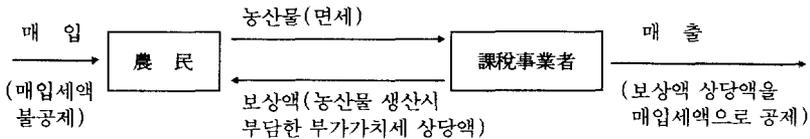
B.J.M. Terra and A.J. Kajus, *A Guide to the European VAT Directives*, Amsterdam: IBFD Publication BV, 1993.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 『日本の 稅制概要』, 1993. 3.

되어 있다. 현재 벨기에 농민의 95% 정도인 6만 6,500명 정도가 非課稅를 선택하고 있고 나머지 5% 정도인 3,500여명이 正常課稅를 선택하고 있다. 正常課稅를 선택하는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申告·納付하고 稅金計算書를 교부해야 하며 非課稅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는 없다. 이 特別課稅對象

農民은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나 농산물을 과세사업자에게 판매시 農産物 購入價格 外에 그 價格의 6%(附加價值稅 相當額)를 追加로 支給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買入稅額으로 擬制하여 控除받을 수 있다. 이때 控除率 6%는 거시경제순환표에 의거 추계한 농민의 稅額負擔分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買入稅額 控除方法을 도식화하면 [圖 2]와 같다.

[圖 2] 擬制買入稅額控除 메커니즘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벨기에와 동일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稅率 및 買入者 控除率을 비교해 보면 <表 29>와 같다.

<表 29> 各國의 擬制買入稅額控除率 比較

(單位: %)

	正 規 稅 率	農産物에 대한 VAT 세율	農産物 買入者 控除率
네덜란드	18.5	6.0	5.0
스 페 인	13.0	6.0	4.0
프 랑 스	18.6	6.5	2.55~3.75

資料: 財經院 稅制室 消費稅課 提供資料.

5. 農·林·畜·水産物 免稅制度의 改編方案

첫번째 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에 대해 課稅하는 것이다. 과세전환되는 경우 세부담의 증가와 농어민들에게 記帳義務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경우 농·림·축·수산물에 대해 과세전환하더라도 많은 농어민이 영세사업자로서 課稅特例適用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장의무를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운영 규모가 커서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농어민에게는 기장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또 食用과 非食用 農産物의 區分이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다.

두번째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은 輸入 非食用 農産物에 대하여 免稅適用을 擴大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 비식용 농산물의 규모는 상당히 커서 이를 면세 적용해 줄 경우 매년 약 7천억원 정도의 稅收缺損이 예상된다.

세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農業生産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課稅하되 農民은 課稅와 非課稅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민이 비과세를 선택할 경우 벨기에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買入稅額控除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 농민이 유통업자에게 생산품을 인도할 때에는 농산물 생산시 부담한 附加價値稅에 상당하는 액수를 追加로 支給받도록 함으로써 농민의 稅負擔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6. 農·林·畜·水産物의 課稅轉換時 豫想 稅收效果

農·林·畜·水産物은 중간투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로써 生産者價格으로 표시되는 總算出額이 구해지며 여기에서 운수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貨物運賃과 유통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商業마진이 더해져서 國內供給規模가 결정되고 여기에 輸入規模가 더해져서 最終消費者가 購買者價格으로 구입하는 總供給額이 결정된다. <表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表 30〉農·林·畜·水產物 附加價值 生産 現況

(單位：百萬圓)

	中間投入額	附加價值 生産額	總產出額	貨物運賃	商業마진	輸入額	總供給額	總供給額 (輸入額除外)
麥類	1,187,449	5,663,277	6,850,726	132,393	15,556	1	6,998,676	6,998,675
其他穀類	135,037	229,341	364,378	34,548	97,105	960,776	1,456,807	496,031
蔬菜	785,546	2,821,719	3,607,265	49,174	554,328	18,056	4,228,823	4,210,767
果實	278,941	863,187	1,142,128	29,407	362,820	30,898	1,565,253	1,534,355
其他食用作物	179,156	705,538	884,694	14,765	109,250	252,813	1,261,522	1,008,709
非食用作物	221,431	795,311	1,016,742	20,159	112,929	899,799	2,049,629	1,149,830
畜產	3,179,089	826,092	4,005,181	27,329	468,733	144,306	4,645,549	4,501,243
養蜂	15,772	19,030	34,802	382	2,093	10,091	47,368	37,277
農業서비스	187,724	281,601	469,325	0	0	0	469,325	469,325
農畜產物 小計	6,170,145	12,205,096	18,375,241	308,157	1,722,814	2,316,740	22,722,952	20,406,212
營林	19,063	26,546	45,609	515	1,032	1,958	49,114	47,156
原木	5,668	57,404	63,072	76,177	27,434	713,799	880,482	166,683
其他林產物	56,718	491,214	547,932	3,306	47,033	52,073	650,344	598,271
林產物 小計	81,449	575,164	656,613	79,998	75,499	767,830	1,579,940	812,110
水產漁獲	1,050,172	1,299,638	2,349,810	20,505	719,970	215,103	3,305,388	3,090,285
水產養殖	130,656	346,617	477,273	3,521	102,279	4,871	587,944	583,073
水產物 小計	1,180,828	1,646,255	2,827,083	24,026	822,249	219,974	3,893,332	3,673,358
總計	7,432,422	14,426,515	21,858,937	412,181	2,620,562	3,304,544	28,196,224	24,891,680

註：1. 1993年 暫定值。

2. 總供給額(購買者價格) = 總產出額 + 輸入額 + 運輸마진 + 商業마진。

3. 總產出額 = 中間投入額 + 附加價值額。

4. 中間投入 = 種子 + 農產物機資材。

資料：韓國銀行 調查第2部 投入產出課。

199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農·林·畜·水産物 總供給額은 약 24조 8,917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따라서 全體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課稅轉換時 그 稅收效果는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는 경우 대략 2조 4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課稅轉換時의 稅收效果는 非食用 作物과 林産物의 總供給額의 合計가 1조 9,600억원 정도이므로 약 1,960억원으로 추정된다.

IX. 要約 및 結論

일반적으로 附加價値稅의 免稅適用은 부가가치세의 기초를 유지할 뿐 아니라 세무행정상의 문제점과 경제활동의 왜곡을 줄이는 데 필요한 最小限度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적 필요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附加價値稅 免稅 및 零稅率 適用을 허용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免稅範圍 設定은 그 政策基準에 符合되지 않는 분야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課稅主體의 特性에 따른 免稅와 中間財 免稅로 인해 과세불평등을 초래함은 물론 세무행정의 번잡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면세를 附加價値稅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서 二元的으로 規定하고 있어 집행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도입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 와서는 現行 附加價値稅 制度上的 免稅範圍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再調整할 필요가 있다. 附加價値稅 免稅範圍 再調整의 原則으로서, 納稅主體에 따라서가 아니라 課稅對象의 特性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며,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 증대를 피할 수 있도록 最終消費段階에 면세하고, 經濟循環에서의 中立性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과세대상에 동등한 과세 적용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行 附加價値稅 制度를 보면, 이 一般原則에 符合되지 않는 免稅惠澤 分野로서 人的用役, 教育用役 中 營利目的의 私設教育用役, 金融 保險用役, 그리고 國家·地方自治團體와 組合이나 政府業務 代行團體가 提供하는 財貨 또는 用役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문에는 속하지 않으나 不動產貸貸用役의 非課稅 轉換과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의 課稅轉換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人的用役의 경우, 지금까지 生産要素인 勤勞用役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논리에서 非課稅해 왔다. 인적용역의 수요자가 事業者인 경우 附加價值 創出의 投入要素로 보아서 인적용역에 과세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들이 個別 消費者인 경우에도 인적용역이 慾望充足을 위해 바로 소비되므로 課稅轉換함이 타당하다.

인적용역 課稅轉換時 問題點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의 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역에서 稅收效果를 크게 기대하지 못하면서 事業者에게 節次上 不便만 주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法務·會計·技術서비스 및 其他 상담소·직업소개소 용역은 課稅轉換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들 용역은 高所得層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稅負擔의 逆進性을 야기시키게 된다. 다만, 용역업 중 學術·技術研究用役은 技術開發 支援 차원에서 課稅轉換 對象에서 除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自由職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도 勤勞類似用役으로서 현행대로 免稅措置할 필요가 있다.

한편, 教育用役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公·私立學校法人 이외의 營利團體에서 제공하는 教育用役까지도 免稅範圍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營利團體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스포츠 등의 教育用役은 그 수요가 주로 高所得層이며 公·사립학교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教育費支出의 比重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非營利法人이 아닌 私設學院 등의 營利團體가 제공하는 외국어·스포츠 등의 教育用役은 課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공계통의 技術系 學院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그 제공자가 營利團體라 하더라도 이 용역의 공급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例外的으로 非課稅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교육용역의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소득을 지닌 자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金融 및 保險서비스의 경우, 課稅의 公平 및 中立이라는 관점에서 금

영업 및 보험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合理的 課稅方案이 강력히 요청되나 概念 및 稅務行政上의 어려움 때문에 금융 및 보험용역에 대한 免稅를 課稅로 轉換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금융·보험업이 教育稅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重複課稅란 비난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대안으로는 銀行의 利子收入, 銀行의 其他 手數料收入 그리고 保險收入에 課稅하는 방법과 利子收入과 手數料收入만 課稅하는 방법 그리고 手數料收入에만 과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銀行의 手數料收入에만 과세하고 銀行의 利子收入과 保險用役은 세무행정상 간편함과 저축형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非課稅하는 것이다.

不動產賃貸用役의 경우, 不動產賃貸用役에 대한 課稅時에 新築建物에 대한 還給으로 인하여 稅收가 줄어든다는 논리에서 免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써 면세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 不動產賃貸用役의 과세나 면세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면세기 이를 통해 課稅標準 管理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新築建物에 대한 附加價値稅 還給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임대용역(상가, 건물)으로부터의 稅收入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부가가치세의 課稅標準 管理는 所得稅와 法人稅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은 全體 租稅制度의 機能 여부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같이 볼 때, 不動產賃貸用役은 現行대로 課稅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農·林·畜·水産物에 대한 免稅(課稅)制度는 非食用 農·林·畜·水産物의 경우 國內生産品은 非課稅하고 輸入品은 課稅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韓·美間 課稅衡平의 문제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때 國內農産物을 課稅轉換할 경우 농어민에게 가장 및 세금 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부담시키게 되어 반발이 예상되고 輸入農産物을 非課稅하는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등 두 가지 방안 모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農·林·畜·水産物 免稅制

度の 改編方案으로서는 農業生産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課稅하되 農民은 課稅와 非課稅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農民이 비과세를 선택할 경우 買入稅額控除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 農民이 유통업자에게 生産品을 인도할 때에는 農산물 생산시 부담한 附加價値稅에 상당하는 액수를 追加로 支給받도록 함으로써 農民의 稅負擔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기타 國家·地方自治團體와 組合이나 政府業務 代行團體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課稅로 전환하여야 하나 이 부문에 대한 과세가 國民生活 全般에 미치는 影響과 課稅의 技術的인 어려움들을 감안할 때 철저한 준비와 연구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附錄 I〉 未加工 食料品の 分類

〈附表 1〉 未加工 食料品 分類表

區 分	關稅率表 番 號	品 名
1. 곡 류	1001	① 밀과 메슬린
	1002	② 호밀
	1003	③ 보리
	1004	④ 귀리
	1005	⑤ 옥수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007	⑦ 수수
	1008	⑧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101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2	⑩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⑫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뿔은 것)(관세율표 제 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
2. 서 류	0714	① 메니옥·츄뿌리·살랩·국아·고구마·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료 뿌리 또는 괴경(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분과 조분
	0701	③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105	④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附表 1〉의 繼續

區 分	關稅率表 番 號	品 名
3. 特用作物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 (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외한 다)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
	0904	③ 후추(파이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일)
	1201	④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⑤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6	⑨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⑩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피암넛과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를 제외하며,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⑪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의 분과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12	⑫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 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	⑬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	⑭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에 한한다)
	1802	⑮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2401	⑯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0910	⑰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4. 과실류	0801
0802		②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③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④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이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⑤ 감귤류의 과일(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附表 1〉의 繼續

區 分	關稅率表 番 號	品 名	
4. 과실류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⑧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⑨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0812	⑫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②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④ 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사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		⑤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선모·세리리아크·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⑥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0711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附表 1〉의 繼續

區 分	關稅率表 番 號	品 名
5. 채소류	0712 0713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⑫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쪄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수축류	0101 0102 0103 0104 0105 0106	① 말(경주말·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당나귀·노새와 버새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③ 돼지 ④ 면양과 산양 ⑤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⑥ 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7. 수육류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①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③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⑤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⑥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⑧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⑩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附表 1〉의 繼續

區 分	關稅率表 番 號	品 名
7. 수육류	0504 0511 0506	①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관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②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근과 원피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③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8. 유란류	0401 0402 0407 0408 19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세 분유에 한한다
9. 생선류	0301 0302 0303 0304 0305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附表 1〉의 繼續

區 分	關稅率表 番 號	品 名
9. 생선류	0306 0307 0511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행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⑧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0. 패 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툇·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 에 공하는 농·림· 축·수산 물과 단순 가공 식료품	0409 0410 1212 2501	① 천연꿀 ②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資料：附加價值稅法施行規則 別表.

參 考 文 獻

- 金文守 外,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英·美·獨·日』, 韓國租稅研究所, 1993.
- 金鳳根(編), 『實務者를 위한 附加價值稅解說』, 조세통람사, 1994.
- 國稅廳, 『附加價值稅 事務處理規程』, 1993. 1. 26.
- 成明幸·金珍洙, 『個別所費稅制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3-08, 韓國租稅研究院, 1993. 12, pp. 44~45.
- 崔 洸, 「間接稅 適正稅率構造의 理論과 實際(I)」, 『韓國開發研究』, 第5卷 第1號, 韓國開發研究院, 1983.
- 崔 洸·李愚澤,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所, 1988.
- 崔明根, 『附加價值稅法論』, 조세통람사, 1993.
- Atkinson, A. B. and J.E. Stiglitz, "The Structure of Indirect Tax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 1972.
- Blankart, C.B., "Income Taxation, Consumption Taxation,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Government Behavior," Barbara L. Wolfe(ed.), *On the Role of Budgetary Policy During Demographic Changes*, Proceedings of the 48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eoul 1992, Supplement to Public Finance, Vol. 48, 1993.
- Brashares, E., J.F. Spreyer, and G.N. Carlson, "Distributional Aspects of a Federal Value Added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30, June 1977.

- Cnossen, S., "What Rate Structure for a Goods and Services Tax? The European Experience," *Canadian Tax Journal*, Vol. 37, September/October 1989.
- , "What Rate Structure for a Value-Added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35, No. 2, 1982.
- Gahvari, F. and C.C. Yang, "Optimal Commodity Taxation and Household Consumption Activities," *Public Finance Quarterly*, Vol. 21, No. 4, October 1993.
- Mclure, G.E., Jr., "Economic Effects of Taxing Value Added," Richard A. Musgrave(ed.), *Broad Based Taxes: New Options and Sources*, 1973.
- , "What Can the United States Learn from the Canadian Sales Tax Debate?," John B. Shoven and John Whalley (eds.), *Canada-U.S. Tax Comparis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 "Economic,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Factors in Choosing a General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46, September 1993.
-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Treasury, *3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1984, p. 51.
- Oh, Yeon Cheon, "An Evaluation of the Tax Reform for a Value-Added Tax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Distribution of Tax Burde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xport," 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February 1982.
- Sabelhaus, J., "What Is the Distributional Burden of Taxing Consump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46, 1993.
- Schenk, A. and Oliver Oldman, "Analysis of Tax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Consumption-Style VAT,”
Tax Lawyer, Vol. 44, No. 1, 1991.

Shoup, C.S., “Choosing among Types of VATs,” Malcolm Gillis,
Carl S. Shoup, and Gerardo P. Sicat(eds.), *Value Added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 C. : The
World Bank, 1990.

———, *Principles of National Income Analysis*, 1947, pp. 105~6.

Steuerle, C.E., *Taxes, Loans, and Inflation: How the Nation's
Wealth Becomes Misallocated*, 1985, p. 47.

Tait, A.A., *Value Added Tax*, London: McGraw-Hill, 1972.

———, *Value Added Tax: International Practice and Problems*,
Washington D.C.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88.